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행정자산 운용방안 -요코하마시 창조협력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The Administrative Asset Management Plan through Win-Win Cooperation
with Private Businesses
-Focused on the Cooperative Creation Front in Yokohama-

김주석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주석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이산하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 2019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최병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19년 01월 01일

발행 2019년 10월 31일

ISBN 979-11-90343-21-3 (9332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김주석. 2019.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행정자산 운용방안-요코하마시 창조협력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정적인 재정환경하에서 날로 증대되는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적, 양적 요구 증대에 부응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적 방안으로서 민관협력의 도시관리 체계 중 기업과 행정의 협력에 관한 것이다.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건축물 비중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기존 건축물 등 공공자산의 효율화를 넘어서 자산화 관점에서 새로운 재정적 이익을 창출해 가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다.

즉, 기초자치단체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비유동자산 등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경제활동 주체인 기업등과의 연계를 통해 민간의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행정서비스를 효율화할 수 있는 정책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유지관리에 있어 비용감축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해당 행정자산의 목적과 유지관리 형태 등을 민간의 경제적 이익활동 등과 연계, 재해석하여 해당 자산에 대한 경제적 활용도를 증대시켜, 새로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방안을 검토, 제시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시 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의 공공시설과 연계된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 및 지역브랜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이제까지 행정의 재정적 부담 대상으로 간주되어 온 공공시설물을 통해 오히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방안을 모색 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구별되는 본 연구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정책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보다 앞서 현장에서 시도되고 있는 요코하마의 창조협력사업 제도 사례를 살펴보고 그 제도 체계와 운용특성 등을 정리하여 제도의 주안점을 확인하였다. 이후 수원시의 공공시설 현황 및 제도환경을 고려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 적용을 모색할 수 있는 사업예제를 제시하였다.

요코하마시의 창조협력사업이란 해당 도시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민간사업자와 행정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각자의 지혜와 노하우를 결합하여 새로운 사업기회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해당지역, 해당사회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를 위해 요코하마시는 이전까지의 민에 대립되는 공공행정이 아니라 민과 관이 서로 파

트너로서 접근하는 새로운 공공만들기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여 나가는 제도체계로서 창조협력사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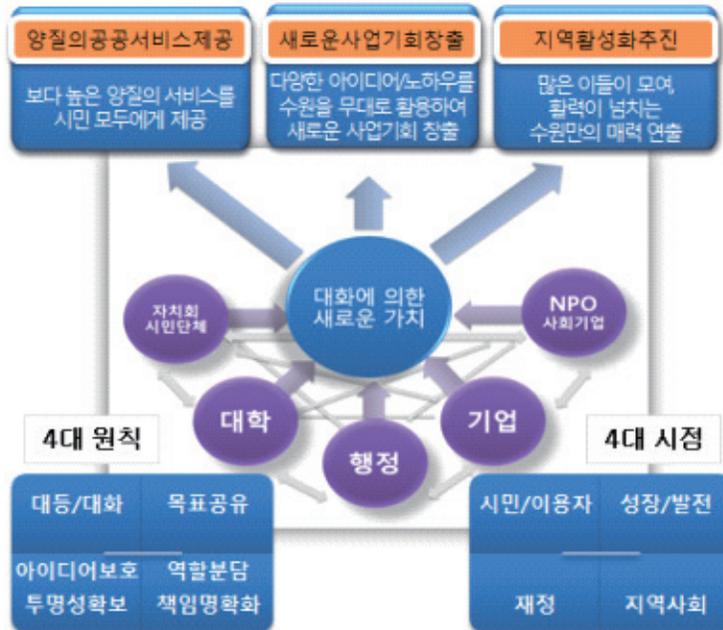
요코하마시 창조협력사업제도의 운용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사업자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 ②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서비스향상 및 지역활성화에 연계한다.
- ③ 민간이나 행정이 사전에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상호 논의를 시작, 축적하여 민관 모두의 영역에서 혁신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간다.

이의 실현을 위해 우선 행정내부에 민관협력사업 추진(상담)부서로서 창조협력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창조협력 사업의 홍보와 논의, 새로운 사업발굴, 기타 다양한 민간영역의 연계와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창조협력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련된 행정정보의 공개 및 발신(활용)체계를 보다 적극적, 개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특히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 목표의 공유, 아이디어의 보호와 투명성 확보, 민관역할분담과 책임의 명확화라는 제도운용의 4대원칙과 시민/이용자 관점, 성장과 발전의 관점, 재정적 관점, 지역사회적 관점의 4대 시점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주체들 간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지역활성화를 이루어 나간다.

이러한 사업체제는 수원시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창조협력사업체계 종합〉

수원시의 공유자산 특히 건축자산 현황 및 그 유지관리 관련 재정 현황을 보면 향후 재정의 경직화가 우려되는 사항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요코하마시에 보여진바와 같이 시가 소유한 공유자산에 대해 유동화를 포함하여 재정적 효율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법제도 환경을 보면 기업과 협력을 통해 시가 소유하는 공유자산의 유효활용을 유도, 활성화는 공공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키고 해당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해당 정책의 공공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유자산의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민간의 관심과 창의적 발상 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계약에 따른 고정적 수입료 체계가 아니라 해당 관리운영 활동의 효율화를 통해 얻은 효율성을 수탁자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현행 수원시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에 의거 지금까지라도 이용관리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운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방향으로 위탁받은 시설의 사용료를 수탁자가 직접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추가적인 시설 활용의 자유도와 자기브랜드 홍보를 통한 브랜드 가치 향상 노력을 유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제도규정을 수정·보완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시설사용료의 수탁자 직접수입화 관점에서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16조제3항에 ‘시설 효율화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금을 일부 혹은 전부를 수탁기관의 직접수익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문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공유시설의 이용·활용완화확대 관점에서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제2항을 ②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당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활용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동조제6항을 ‘⑥수탁기관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전단, 인터넷, 전화, 현수막 등) 등이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당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마크 이외에 수탁기관의 CI등을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규정의 완화와 관리운영의 자유도를 확대함에 있어 자칫 해당시설 본연의 목표를 간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의무와 연계된 페널티 규정 또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민관협력, 창조협력사업, 공유재산, 공공시설, 민간위탁

차 례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방법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6
제2절 기존연구 동향 및 본연구의 위치	7
1. 기존연구 동향	7
2.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10
제2장 요코하마시 창조협력 사업	15
제1절 창조협력 사업제도의 도입배경 및 과정	15
1. 요코하마시 일반	15
2. 요코하마시 창조협력사업 도입 배경	16
3. 요코하마시 창조협력사업의 추진과정 및 초기 주안점	20
제2절 창조협력사업제도 특성	25
1. 제도 일반	25
2. 제도운영체계	30
3. 창조협력 사업 파트너 선정방식	37
4. 인센티브	39
5. 창조협력 사업제도 운용기준 특성	39
제3절 창조협력사업제도 운용사례	42
1. 창조협력사업제도 운용사례 일반	42
2. 수법별 실제 사업사례	44

제3장 수원시 제도도입 적용 가능성 검토	55
제1절 수원시 주민이용 공공시설 관리운영 현황 검토	55
1. 수원시 소유 위탁운영 공공시설 재정현황	55
제2절 공유재산관련 법·제도 규정 검토	59
1. 공유재산의 정의	59
2.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관련 법·제도 기준	60
3. 법제도 규정 검토 종합	65
제3절 수원시 가상적용	67
1. 광고사업 적용	67
2. 명명권 적용	68
제4장 결론	73
제1절 종합	73
제2절 정책제안	77

표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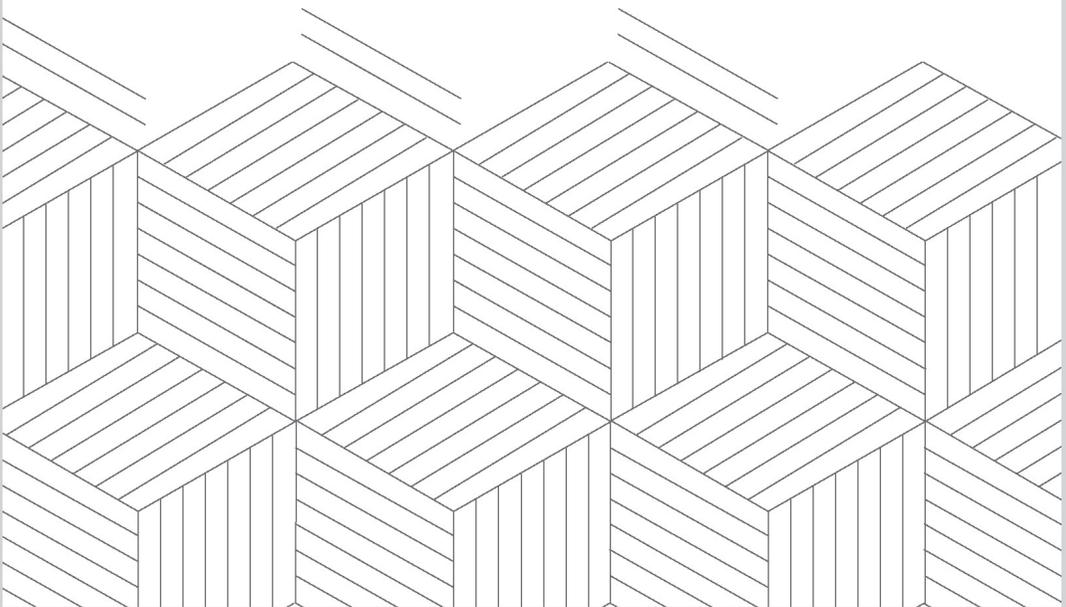
〈표 1-1〉 참여와 협동의 (수원형) 도시관리	3
〈표 1-2〉 시자산의 유효활용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관련 기존 연구 동향	9
〈표 1-3〉 본 연구의 위치	11
〈표 2-1〉 창조협력사업 수법별 메리트	35
〈표 2-2〉 창조협력사업수법별 기대효과 및 유의사항	36
〈표 2-3〉 창조협력 사업 파트너 선정방식별 특징	38
〈표 2-4〉 창조협력사업 연도별 제안사업 현황	43
〈표 2-5〉 요코하마시 광고사업 사례 일부	44
〈표 2-6〉 요코하마시 명명권 운용사례 일부	45
〈표 2-7〉 요코하마시 명명권 사례	46
〈표 2-8〉 지정관리자와 업무위탁 제도 비교	49
〈표 2-9〉 기업등에 의한 지정관리 가능 대규모 전문시설	50
〈표 3-1〉 수원시 소유건물 현황	56
〈표 3-2〉 수원시 자산변화	57
〈표 3-3〉 국내법제상 재산의 종류와 구분	59
〈표 3-4〉 수원시 화장실 사례	68

그림 차례

〈그림 1-1〉 수원시 재정현황: 지속적인 비유동자산 및 자본지출의 증가	5
〈그림 2-1〉 요코하마시 보유토지의 감축계획	17
〈그림 2-2〉 2008년이후 20년간 보전비 추계 (2006~2008년은 실적)	18
〈그림 2-3〉 창조협력프론트 부서 역할	32
〈그림 2-4〉 창조협력 포럼	33
〈그림 2-5〉 창조협력사업 대상 시설 DB화 및 민관협력 수행 체계	34
〈그림 2-6〉 창조협력사업에 있어 민간제안의 사업화 과정	38
〈그림 2-7〉 창조협력사업체계 종합	40
〈그림 2-8〉 창조협력사업 연도별 신규 추진갯수	42
〈그림 2-9〉 명명권 사용자모집방식별 절차	46
〈그림 2-10〉 기존 학교용지 등 매각이익의 지역투입	47
〈그림 2-11〉 저미이용 토지활용 지역복지시설 공급 사례	47
〈그림 2-12〉 공모설치 관리제도(Park PFI)	48
〈그림 2-13〉 관리위탁제도와 지정관리자제도 비교	50
〈그림 2-14〉 지정관리자PDCA사이클	51
〈그림 3-1〉 수원시 사유건물 분포현황	56
〈그림 3-2〉 주민편의시설의 자산규모 변화와 총자산 대비 비율	57
〈그림 3-3〉 수원시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연도별 변동추이	58
〈그림 3-4〉 KT 구단 마크	6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방법
제2절 기존연구 동향 및 본연구의 위치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방법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본 연구는 수원시가 주창하는 사람이 반가운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민관협동(民官協動)¹⁾의 수원형 도시관리 체계(〈표 1-1〉참조)에 관한 것이다. 2015년 이래 일련의 연구과정을 거쳐 주민과 행정의 협력관계에서 마을만들기 등에 대한 정리를 지역계획 과정을 통한 현장진행형 지역경영 조직의 구성, 사업과정을 통한 공동체강화 유도형 공모사업, 지역(주민)공동체에 의한 지역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직접관리 등을 다루어왔다.²⁾

본 연구는 이러한 행정과 민간의 참여와 협동(協動)을 통해 구현되는 도시관리체계 중 기업과 행정의 협력적 활동에 관한 것이다.

〈표 1-1〉 참여와 협동의 (수원형) 도시관리

협동 주체	협동목표	필요 조직	정보교류
시민※	생활권단위 도시기본계획	생활권단위 시민계획단	정보개방※※ / 대화논의
행정 주민	마을단위 지역계획	마을단위 주민조직 (마을경영)	
	공동체 중시형 공모사업	실행 모임	
	공동체에 의한 공공시설 유지관리	전담 주민조직 (기본방향/주민센터/도서관/공원 등)	
	쇠퇴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	-	
기업 등	창조협력 사업(창조경제)발굴·육성	수원 창조협력실	

※이외에 수원에서는 시민참여예산제, 좋은시정위원회, 시민배심법정, 온라인 등이 운영 중.
시민참여예산제를 동단위 주민참여예산제로 변경 검토 중.

※※정보교류 활성화 방안은 향후 정보공개 관련 법제가 확정된 이후,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지나친 온라인 중심 의견수렴/교환은 지역단위 커뮤니티 모임에 부정적일 수 있음.

1) 여기서 협동은 협동(協同) 즉 함께 협력하는 협의나 합의수준의 것에 그치는 것에서 나아가 협동(協動) 즉, 실질적인 협력적 활동을 전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수원시정연구원의 김주석 수행과제 참조

민관협력의 도시관리체계에 대한 구상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서 고려되었다.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전지구적 기후환경의 변화에 기반하여 대두되기 시작(Agenda21) 하여 많은 분야에서 강조되어 왔으며, 이후 기후환경 분야를 넘어서 재정환경은 물론, 사회환경을 포괄하는 종합적 관점(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최근 도시관리 분야에 있어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점에서 ‘도시재생’ 및 ‘주민자치’ 등 주민 참여와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방향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고도성장기를 거쳐 경제적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세수의 확충이 한정적인 재정환경 하에서도 날로 증대되는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적, 양적 요구 증대에 부응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각 지자체들은 노력하고 있으나, 공공시설 등의 유지관리비용은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민주주의 체계의 강화, 시민들의 참여의식의 증대에 따라 사회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참여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김주석, 2018:3)

※ 도시관리에 있어 민관협력의 강조배경

- 국제환경 : AGENDA 21, SDG 등 지속가능성을 이루기 위한 국제적 합의
- 경제환경 : 저성장기조에 따른 행정재원의 한계 → 개발에서 관리로, 새로운 행정재원발굴
- 사회환경 : 참여와 협력에 대한 관심 및 활동증대, 지역과 기업의 상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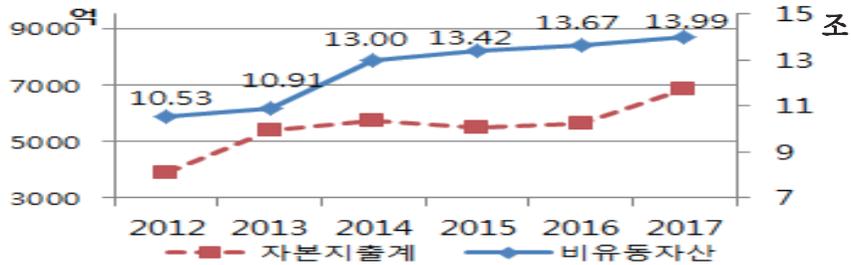
특히,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 등 서비스 이용자의 직접참여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 및 생활SOC사업 등의 정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경제활동의 대표적 조직인 기업의 사회적 기여 및 지역과의 상생 등도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결과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직접 이용자인 주민레벨에서 해당 서비스의 공급주체인 행정과 협력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보다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 모색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우리현실에서의 행정재정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증가하는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서비스 요구에 대응,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정책목표이기도 하다.

2) 연구의 목적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건축물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공공건축물의 신축보다는 기존 건축물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장성화 외, 2018:4)

수원시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가로시설물 등 공공시설, 발간·인쇄물 등 다양한 공공자산을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많은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단위 : 억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비유동자산	105,318	109,060	130,020	134,191	136,723	139,914
자본지출	3,878	5,413	5,749	5,505	5,622	6,850

〈그림 1-1〉 수원시 재정현황: 지속적인 비유동자산 및 자본지출의 증가

특히, 상기 〈그림1-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유지관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해야하는 수원시 소유의 비유동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약14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 기준10.53조에 비교하여 거의 33%가 증가한 수준이다.

한편, 수원시는 인구 123만여명, 예산규모는 2019년1월1일 기준 2.78조원에 달하는 경기도 최대 기초자치단체이며, 기업체수는 1,201개, 총인원수는 5만604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 단체이기에 경제정책은 물론 제도적·구조적 권한문제 등으로 신규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도와 관련된 권한은 매우 한정적이다. 당연하게도 수원시의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신규 세수 확충보다는 기존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비유동자산 등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경제활동 주체인 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민간의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행정서비스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행정자산의 유지관리에 있어 시각을 바꾸어 단순한 유지관리에 있어 비용감축 뿐만 아니라 해당 행정자산의 목적과 유지관리 형태 등을 민간의 경제적 이익활동 등과 연계, 재해석하여 해당 자산에 대한 경제적 활용도를 증대시켜, 새로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방안을 검토, 제시하고자 한다.

목적: 행정자산의 재해석 → 비용유발자산에서 수익자산으로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서비스 규모와 요구는 점차 그 요망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행정과제도 복잡화되고 있으나, 행정이 가진 자원과 노하우 등은 매우 한정적인 상황이다. 인구감소화 경향에 따른 자치단체 간 경쟁 또한 가속화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시설관리 및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온 민간기업 등의 힘을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한편, 민간기업 입장에서 최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과 함께 자사의 노하우를 활용, 민관협력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기대도 증대하고 있다.³⁾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보다 앞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소유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시 재정환경을 개선해 오고 있는 요코하마시의 창조협력사업 사례를 고찰해보고 그 운용특성과 시사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관련 문헌 및 인터넷 조사,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대상사례와 현황을 조사한다. 특히, 대상시설의 종류와 운용체계 등을 중심으로 운용특성을 정리하고, 수원시 공공자산의 관리운영에 있어서의 사업운용 가능성 및 요구되는 제도기준을 정리한다.

3) 일본수출제한에 따른 재료 및 장비산업에 대한 기술협력과 제도적 지원, 스마트 도시등에 대한 기업과 행정의 협력적 사업시행 등 최근 R&D분야 및 실제 산업생산분야에 있어 전방위 적으로 민관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제2절 기존연구 동향 및 본연구의 위치

1. 기존연구동향

공공자산의 활용과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①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해당 시설 자체의 건축적 기능의 지속 관점에서 시설현황 파악 및 유지관리 시스템(공공시설 평가방법, 자산관리정보시스템, 시설관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②(지역공동체 기반의) 도시재생 관점에서 공공시설물의 소유권, 운영권, 관리권 중 일부 권한을 지역공동체에 양도하거나 이양하여 지역공동체의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지역자산화(한승욱, 2017:2)가 강조되고 있다. 한편, ③행·재정적 측면에서 자산의 성격 변환에 대한 접근으로 고정자산을 유동화하는 특정 방안으로서 명명권(Naming Rights: 명명권 도입의 필요성, 실태조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개별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① 유지관리 시스템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시설의 규모 및 재정상황과 유지관리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재정상태의 변화,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위험성, 무리한 공채발행의 문제점, 시설정보의 일원화 및 전체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며(이상준 외, 2007; 이상준 외, 2010). 이후 후속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상황과 재정상황 조사를 바탕으로 보유시설량의 적정성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시설평가수법을 물리적인 평가(내진성능평가, 건물성능평가, 시설규모, 가변성)와 소프트웨어 측면의 평가(시설의 필요성, 기능의 이전가능성, 시설이용현황)로 나누어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용방침이 제안되었다.(이상준 외, 2013)

한편, 우리나라 K공사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현황(자산 및 인력)을 검토하고 공공 FM(Facility Management)의 활성화 방안이 제안되었는데, 공공FM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계획 및 예방보전 체계 구축과 통합적 조직(재정+자산관리+유지관리)정비, 시설관리 의사결정 모델(K공사 예시)구축의 필요성을 언급되었다.(조동열 외, 2012)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적화된 유지관리계획의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에 있는 기능을 중복해서 개발하지 않고 자산관리 핵심 업무만을 구현하며, 시스템 구조를 계층으로 분할하고 자산관리시스템과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을 연동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최원식 외, 2010)

이외에 활용가능 시설현황 파악을 위한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시설의 활용방침을 제안(이상준 외, 2013)하거나 유휴 공공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자체의 역사·문화적인 가치에 집중하여 지역의 문화예술·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장성화 외, 2018)

② 지역자산화

지역(시민)자산화는 도시의 민주적 재생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그 정당성이 주장되었다.(양준호 외, 2019) 지역자산화의 방법론으로서 지속성 관점에서 지역공동체 기반의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제시하거나(배유진, 2019), 공공시설물을 운영하는 지역공동체가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재원 및 인적 자원 확보가 용이하고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지역자산화 지원조직 형태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소규모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단계적 지역역량강화와 전문화가 제시되었다.(한승욱, 2017)

또한, 도시재생에서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도 지역차원에서의 지역자산 공유재화의 가능성이 검토되고, 기금조성 등의 제도적 방안이 제시(이정훈 외, 2019)되었다.

③ 자산유동화 관점에서의 명명권(Naming Rights)

일본의 네이밍라이츠 사례를 중심으로 도입시설의 용도분류, 네이밍라이츠 비용을 분석하고, 기업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였다. 네이밍라이츠의 도입은 시설유지관리비용의 확보가 유효한 수단이지만, 많은 시설에서는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만을 충당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으며, 스폰서의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네이밍라이츠 구조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마스카와 유지 외, 2010)

우리나라에서는 명명권의 정의 및 도입배경, 해외사례를 통한 제도도입의 효과, 제도도입 및 시행에 따른 주요 고려사항, 지자체 공공시설의 명명권 도입 사례 등을 검토하고 지자체 공공시설의 명명권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제도도입에 앞서, 지역사회 의합의가 우선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가이드라인마련 또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양진우, 2015)

또한, 국내외의 명명권을 활용한 공연장 사례를 대상으로 명명권 진행동기 및 특징과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명명권 후원 공연장을 자사의 마케팅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명명권 후원 공연장은 공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해 공연장은 해당 공연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와 기업의 비전과 공연장의 미션

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되었다.(김원희, 2015)

〈표 1-2〉 시자산의 유효활용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육성체계 관련 기존 연구 동향

주제	연구내용	연구자	
시 설 평 가 / 관 리 시 스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산전략 책정을 위한 연구 (전시시설을 대상으로 한 활용방 침 평가수법의 제안)	시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기준 개발과 대상지 시설평 가 및 보유시설의 활용방침 제안	이상준 외 (2013)
	공공시설 유지관리 실태조사 기 반 공공FM 활성화 방안	상태평가 기반 예산수립 지원 시스템을 활용중인 K공사를 중심으로 시설유지관리 실태조사 및 공공FM 활성화 전략제시	조동열 외 (2012)
	일본의 공공시설 매니지먼트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시설 매니지먼트의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기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추이와 유지관리 실태(노후화, 관리 도면 보유 등) 검토를 통한 이슈도출	이상준 외 (2010)
	공공시설 자산관리 정보화 방안	자산관리의 국내외 관련 연구기술 검토, 공공시설 자산관리 정보화를 위한 방안 제시 및 타 시스템과 비교분석을 통한 효율성 검토	최원식 외 (2010)
시 자 산 의 유효 활 용 화	공공 유희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방안 연구	유희 공공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자체의 역사·문화적 인 가치에 집중하여 지역의 문화예술·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 제안	장성화 외 (2018)
	도시를 민주적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시민자산화운동:안천의 도시공간과 커먼즈, 도시에 대 한 권리	도시의 민주적 재생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지역 (시민)자산화의 정당성 논의	양준호외, 2019
	협동조합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 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방 안	지역자산 운영조직으로서 지속성 관점에서 지역공동체 기반의 마을관리 협동조합 제시	배유진 (2019)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 산화 방안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지역자산화 지원조직 형태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단계적 지역역량강화와 전문화	한승욱 2017
네 이 밍 라이 츠	젠트리피케이션 대안 - 지역자 산의 공유재화	젠트리피케이션 해결방안으로서 지역자산 공유재화의 가능 성 검토, 기금조성 등의 제도방안 제시	이정훈 외 (2017)
	부산시의 공공시설 명명권제도 도입의 필요성	명명권의 개요 및 도입사례,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검토	양진우 (2015)
	기업의 공연장 명명권 후원에 관한 연구	기업의 공연장 명명권 후원의 현주소와 명명권 후원의 지속화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	마스카와 유지 외 (2010)
	명칭부여권에 대한 법적고찰 (스포츠 시설·프로구단과 관련 한 명칭부여계약을 중심으로)	명칭부여권이 가지고 있는 법적 문제점 검토	김원희 (2015)
이 밍 라이 츠	공연장 네이밍라이츠 스폰서쉽 에서 단순노출효과와 조화가설 이 기업 브랜드 연상강도에 미 치는 영향	공연장 네이밍라이츠 스폰서쉽 사례를 대상으로 단순노출효과 와 조화가설의 상관관계를 분석	윤태영 외 (2011)
			최여정 (2013)

한편, 건축물이외에 명명권의 적용대상을 건축물을 넘어선 보다 광범위한 시설로 확장하

여, 시설소유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그 효용성이 검토되었는데(윤태영 외, 2010), 명명권의 법적 성격과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해 스폰서의 입장에서 검토, 시설표기의 변경요구 권리, 시설 내 로고마크 등 게재권 등 폭넓은 대상 및 대상 시설과 관계된 부수적 권리(교통 표지판, 공공시설 등의 안내판, 신명칭의 사용 및 지적재산권 등) 그리고 스폰서로서의 기업이 가지는 의무(지급의무, 시설이용 규칙 준수, 권리양도 등)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필요성이 언급되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사용수익과 동등하게 고려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유사 계약으로 구성하는 방법과 광고계약에 준하여 구성하는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명칭부여권 관련 분쟁사례(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계약 파기 문제, 공물의 성격에 기인한 규제 가능성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를 바탕으로 명칭부여계약에 있어서의 고려사항(해지 조항의 구체화, 지역 주민이나 팬과의 정서적 연결감 반영, 권리 관계의 명확화)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특히 기업의 스폰서 효과와 관련하여 기업스폰서와 네이밍라이츠 스폰서를 받는 공연장 관계에서 단순노출효과와 조화가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각각의 요인에 대한 결과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순노출효과가 스폰서를 하는 기업과 스폰서를 받는 공연장의 이미지 유사성에 영향을 미치나 연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밝힘으로서 기업은 스폰서쉽 노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려 필요성이 언급되었다.(최여정, 2013)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도시단위에서 행정이 소유하는 공유(公有)자산을 대상으로 기업과 행정이 상생협력을 통해 단순히 그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의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공공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새로운 재정수익을 창출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산으로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명명권을 포함하여 고정자산의 유동화 및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코하마시 창조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그 특성과 수원시에 있어 시사점 등을 도출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시 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의 공공시설과 연계된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 및 지역브랜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이제까지 행정의 재정적 부담 대상으로 간주되어 온 공공시설물을 통해 오히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 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구별되는 본 연구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표 1-3〉 본 연구의 위치

주제	연구내용			
사자산의 유효활용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육성체계	유지관리 시스템	시설의 평가체계		본연구의 위치
		관리 운용 체계		
	행정자산의 적극적 활용	유동자산화		
		부가가치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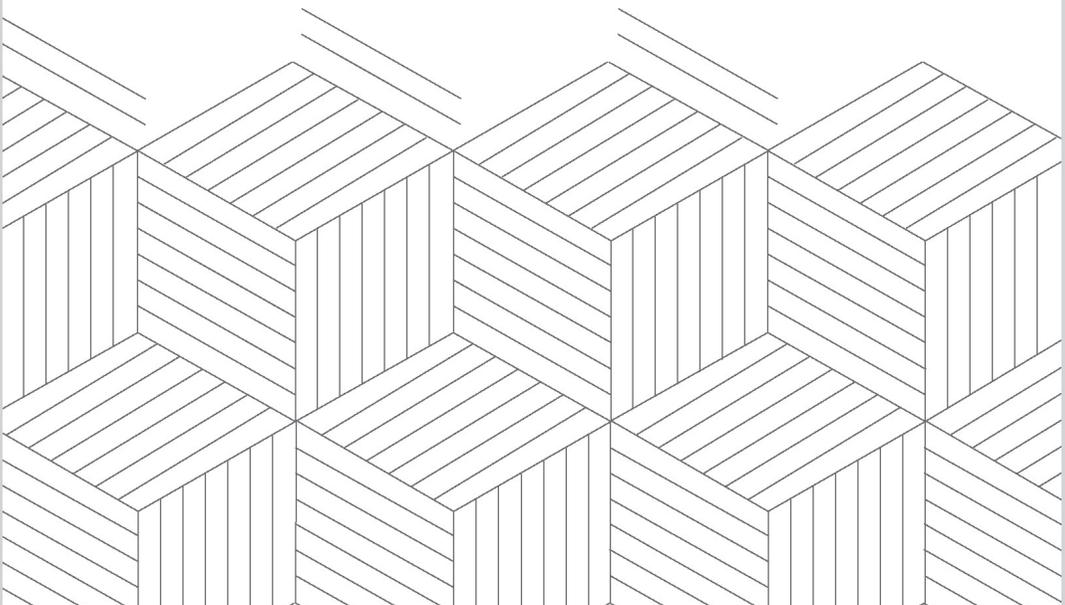
제2장

요코하마시 창조협력(共創) 사업

제1절 창조협력(共創) 사업제도의 도입배경 및 과정

제2절 창조협력사업제도 특성

제3절 창조협력사업제도 운용사례



제2장 요코하마시 창조협력(共創) 사업

제1절 창조협력(共創) 사업제도의 도입배경 및 과정

1. 요코하마시 일반

요코하마시의 인구는 약375만(3,750,395인, 1,712,681세대; 2019.11.1.기준)이다. 다만 동경 및 동경권으로의 취업자가 많아 주간인구는 거주인구에 비해 약 10%정도 적다(2004년 기준 90.52%) 면적은 434.98km²이다.

2019년 공표된 요코하마시 시내총생산액은 약 13조5596억엔(카나가와현 총생산액 34조 6362억엔의 약 39.1%, 일본국가 총생산액536조7950억엔의 2.5%)이다.

시민총생산액은 15조3987만엔으로 약 2조2878엔 정도가 시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다.

① 국제도시·국제항만도시

요코하마항은 문명개화의 수로였다. 근대에 있어 구미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구역할을 담당하였다. 이것은 요코하마가 갖는 도시이미지를 크게 규정하며, 일본의 도시로서는 높은 서양풍의 도시인상을 부여한다. 이는 또한 관광도시라는 측면에서도 영향을 준다.

이러한 관광국제도시의 접점이되는 한 예가 요코하마 중화가(차이나타운)이다. 요코하마 중화가는 샌프란시스코와 경쟁하는 중화가로서 세계에서 1, 2위의 규모에 달한다. 중화가의 전체 점포수는 약 430점이며, 이중 중화요리 전문점이 약 180개이다. 사천요리부터 상해, 광둥, 북경, 대만요리까지 중국각지의 다채로운 중화요리가 제공된다.

② 케이힌 공업지대의 도시

요코하마도 그 일단에 위치하는 케이힌 공업지대는 제2차세계대전부터 당시 선진산업이었던 중화학공업을 담당해왔다. 따라서 요코하마는 공업도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전후에 있어 산업구조의 큰 변동으로 중화학공업우위라고 하는 색채는 상대적으로 옅어지고 있고, 조립가공공업부문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업전체적으로 보면 공업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③ 자연환경이 우수한 주택도시

요코하마는 동경의 통근권(전차로 30분)에 있는 대도시이다. 이에 따라 고도 성장기에는 동경에서 나오는 신규 주민을 수용하는 베드타운의 성격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요코하마는 동경근교의 베드타운이긴 해도 원래 도시규모가 크고, 독립적인 주택지의 가치도 작지 않다. 요코하마는 대도시이면서도 광대한 농경지 및 자연 녹지를 갖는 등 주택지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이 우수하다. 요코하마시의 농지는 4,400ha로 시 전체의 10%에 달한다. 더욱이 요코하마시의 지형은 구릉과 협곡이 많아 농경지는 밭과 과수원이 농경지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농경지에 언덕과 사면에 잡목림을 더하면 녹지 등의 토지가 요코하마시 전체 면적의 20%에 달한다.

④ 동경의 종속성이 강한 대도시

요코하마시는 인구면에서 일본 제2의 대도시이다. 그러나 요코하마시는 이 인구규모의 대부분이 동경에 의존도가 높다. 가령 취업종사비율을 보면 시내취업자의 20%정도는 동경방면을 주된 근무처로 한다. 또 요코하마시의 주민이 취득하는 소득의 20%정도는 시외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산업구조면에서도 보이는데 요코하마를 본사로 하는 기업은 도시규모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다. 업종에서 보면 도시형 공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출판인쇄공업의 비율이 낮은데, 이는 이러한 업종이 동경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발적인 공업의 성숙도와 연관되는 도매업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 동경의 베드타운이라는 의미에서 주택건설이 많아 시내총생산에 접하는 건설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상과 같이 전체적으로 내발하는 공업의 집적이 약하고 이러한 것을 반영하여 법인세가 시세 전체 중에 접하는 비율은 대도시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고, 또한 은행 예대율도 낮다. 요코하마시의 산업구조는 도시의 자립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약점이지만 반대측면에서 보면 시민의 20%이상이 동경권을 근무처로 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이러한 계층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으로 타 도시와 비교해 요코하마시에서는 이러한 시민의 수가 많다. 이러한 시민들에 의해 동경권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을 고려하면 지역 산업활동에 소득을 기대지 않아도 시민가계가 재정수입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풍족하다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요코하마 경제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2. 요코하마시 창조협력사업 도입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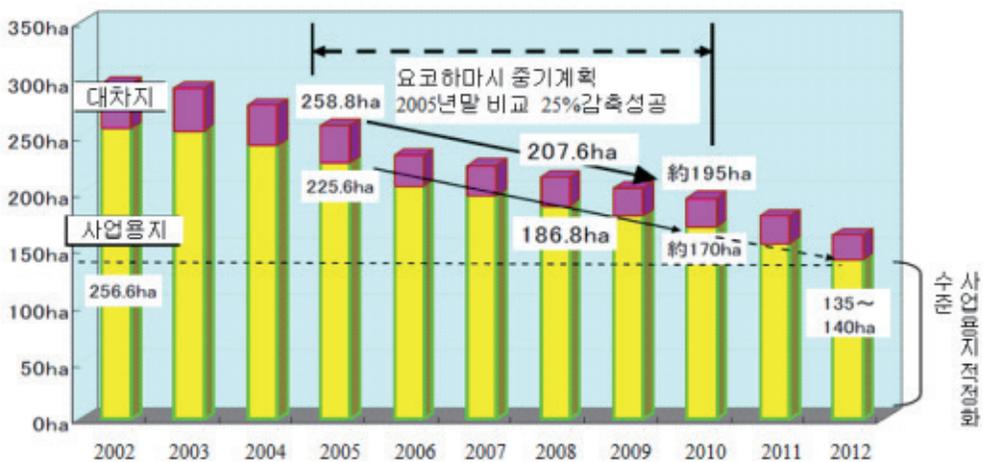
일본은 전반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재정기반의 취약화, 사회인프라의 노후화 등을 고려한 현실적 대응이 긴급한 과제로 되고 있으며 특히, 요코하마시는 인구 365만, 시내총생산 127

조원의 일본 최대 기초자치단체로 행정과제도 복잡화하고 있다.

행정의 재원 및 노하우 등이 한정된 가운데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해가기 위해서는 엄정한 경쟁 속에서 노하우를 축적해 온 민간기업 등의 역할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민간 기업에 있어서도 최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민간회사가 축적해 온 노하우를 활용한 민관연대비즈니스의 기대도 증대하고 있다.(共創추진지침:1)

1) 공공시설 유지관리 관련 재정 상황

요코하마시의 공유재산에 대한 정책은 2000년 9월 행정내부 지침으로 작성, 통보된 ‘보유토지의 활용감축의 추진에 대해(기획국장재정국장)’를 통해 추진된 보유토지의 감축노력을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지침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토지의 취득을 금지와 보유토지의 활용 도모를 통해 보유토지의 처분임대를 촉진하는 것 등을 명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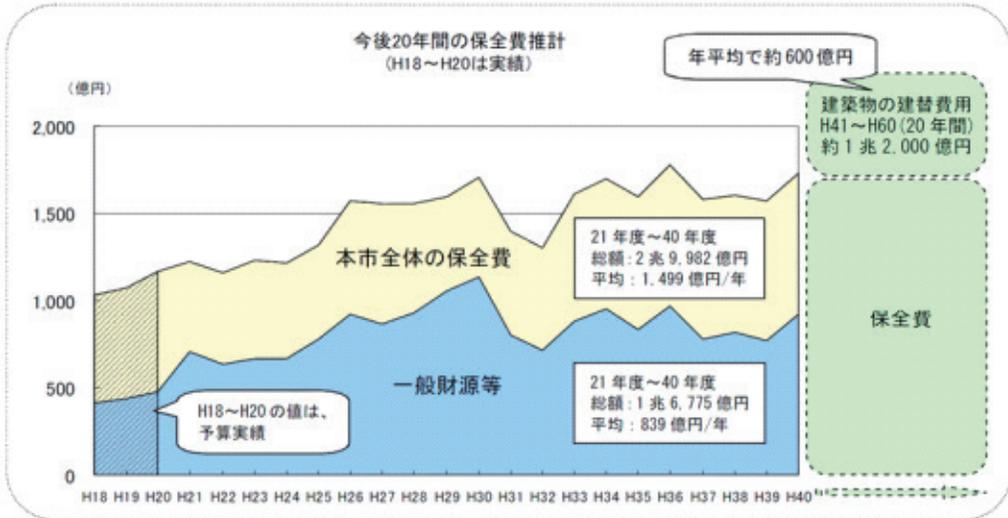


〈그림 2-1〉 요코하마시 보유토지의 감축계획(2016.12 책정 요코하마시 중기계획)

이후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 2008년 이후 미국발 경기침체와 요코하마시의 위기적인 재정 상황 등에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토지, 건물)을 자산으로 다루어 공공공익적 목적을 확보해가면서 자산경영의 시점에서 그 유효활용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갈 필요가 생겼다.

용도폐지된 건물이나 토지를 포함하여 시가 보유하는 토지를 주된 대상으로 하였던 이제까지의 보유토지의 활용 절감의 정책기조를 이어가면서 계획이나 방침을 정리, 통합하여 새로운 자산경영의 시점에서 대책을 보강하여 자산의 유효활용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적인 방향성을 정리하여 요코하마시 자산활용 기본방침을 정하게 된다.



〈그림 2-2〉 2008년 이후 20년간 보전비 추계 (2006~2008년은 실적)

실제 2008년 이래 2028년까지 필요한 공공시설보전비를 보면, 기업회계 등을 포함한 시 전체 보전비 합계액은 약33.4조원(일반재원 약17조)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2018년도에는 약 1조7천억원, 2024년도에는 1조8천억원로 (2008년도 의 약1.5배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 중 보전비의 주된 재원인 일반재원 등(시민세나 고정재산세 등의 시세 및 지방채)의 합계액은 약 17조원이 되어, 2018년도에는 약1조1천억원(2008년도의 약2.3배)의 보전비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더욱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8년 이후 20년간 건축 후 70년이 경과하여 재건축시기가 되는 시설이 약 490만㎡발생하여, 약12조원의 재건축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 도시관리에 있어 민관협력 정책기조

요코하마시는 더 이상 고도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비 성장확대’의 시대인식을 갖고 도시관리에 있어 ‘민간의 힘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도시 요코하마’를 기본이념으로 책정하였다.

공공서비스는 행정만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역할은 민간의 창의적 노하우와 노력을 지원하고, 각각의 목표나 꿈이 실현되어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기본자세로 표명하며, ‘관에서 민으로’의 사업전개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제까지 수행해온 요코하마시의 민관연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 공공서비스에의 민간도입 : PFI, 지정관리자제도, 민영화민간위탁 등

- 공유자산의 유효활용 : 광고사업·명명권의 도입, 공유지예의 정기차지방식에 의한 시설정비 등
- 민간활동지원에 의한 지역활성화 : 구조개혁특구의 활용이나 기업유치의 촉진 등

3) 요코하마시의 도시관리에 있어 민관협력 활성화 방향

요코하마시는 민관연대를 폭넓게 추진해왔으나 시민적 가치향상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共創추진지침:2)

① 행동양식의 상호이해와 목표의 공유

민관연대를 추진해감에 있어 당연히 민간과 행정의 의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행정내부에는 민간에 큰 기대를 갖고 사업을 맡기지만 기대한 정도의 서비스 향상이 실현되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문이 남아있고, 민간 측에서는 민관연대사업에 참여했지만 행정의 필요이상의 개입에 불신을 갖게 되고, 행정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가를 이해하지 못해 곤혹스러워 하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쌍방이 상호 의향이나 행동양식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가치관을 공유하지않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되어진다.

공공의 복지를 존립기반으로 하는 행정과 이윤을 확보하지 않으면 존속할 수 없는 민간기업은 자체적인 행동원리나 사고방식이 다르다. 민관연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행정과 민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양질의 대 시민서비스를 보다 적은 시민부담으로 제공한다고 하는 목적을 공유하고, 각자가 가지는 장점을 끌어내고, 약점을 보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② 민간 노하우의 활용과 최적수법 선택

이제까지의 민관연대사업에서는 대부분 비용절감을 지향하는 행정측의 일방적인 조건제시에 그쳐, 민간의 능력이나 창의성이 최대한으로 발휘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민간의 지혜는 저비용의 오퍼레이션을 실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혜의 중핵은 문제의 발굴, 명확화, 아이디어의 창출이라고 하는 가치창조, 그리고 혁신에 있다. 기존의 체계에서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지식'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방안과 자세가 요구된다. 대 시민서비스의 향상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 민간의 노력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적인 관점에서의 방안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민간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어도 공정·공평을 추구하는 행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실천적 방안으로 이어 가는 규정이나 프로세스가 명확히 되어 있지는 않다. 또, 개개의 수법에 국한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 민간의 노하우를 시민적

가치의 향성에 충분히 활용해 갈 필요가 있다.

③ 민간 모니터링과 민관연대사업의 매니지먼트

행정은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의 프로세스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지만, 사업개시 후의 사업자의 업적의 모니터링이나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 등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점이 많이 있다. 사업자 선정에서 행정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가치의 향상이라고 하는 목적이 실현되어지고 있는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대 시민서비스가 중단할 리스크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 가야 한다.

지속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해 서비스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나 모니터링의 방식, 리스크 분담의 명확화, 사업자에의 인센티브 부여 방법 등, 행정 측의 사업기획 및 수행 능력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3. 창조협력사업의 추진과정 및 초기 주안점

1) 기획배경 및 과정

요코하마시는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대량으로 보유하는 공공시설의 유지와 유효활용을 모색함에 있어 자산경영 시점에서 보다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설군별로 시설의 특성에 대응해 시설의 보전 및 이활용에 관한 시책으로서 창조협력사업을 추진하여왔다.

초기 시유자산에 대한 시책으로는 건축물계와 도시기반시설계로 구분하여 기본방침과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수행내용을 명확화하고 재정적인 시점에서의 시책을 마련하며, 집행체제를 정비하였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상파악 및 평가지표 책정 등 수행내용 명확화
 - 공공시설이 갖는 특성이나 유지관리체제의 차이 등으로 인해 건축물계와 기반시설계로 구분하여 최적화를 위한 현상파악 및 평가지표의 책정, 정기점검제도의 구축 및 수선예의 민간활력의 도입 등에 대한 기본방침에 기반하여 제도운용 내용을 정하고, 그것에 기반하여 시책을 추진한다.
- 재정적 시점에서의 시책
 - 재정적인 면에서는 점검결과에 기반한 계획의 수정과 중요성 및 재정을 예측하면서 연계해 가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가이드라인을 2009년에 책정하고 2010년도 예산편성에 맞추어 일부 시행을 행하였다. 2011년도 예산편성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여왔다.

- 또한 보유토지의 활용감축에 대해 민간매각이나 임대를 중심으로 한 자산활용방침을 2009년도에 책정하였다.
- 집행체제의 정비
 - 집행체제의 정비에 대해서는 모든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활용에 관한 데이터를 1원화하고, 계획적인 유지보전을 추진(유지 및 이·활용 종합조정, 최적화와 재정대응의 연동, 자산의 유효활용)함과 함께 건축물계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의 이·활용 등의 최적화에 대해 실시할 수 있는 집행체제를 2010년도에 정비하였다.

한편, 요코하마시 창조협력사업은 2008년 6월 30일 행정과 민간이 상호 대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과 사회적 과제의 해결에 돌입할 수 있도록 상담·제안창구로서 공동창조프론트를 개설, 운용하면서 개시되었다.

창조협력사업의 세부지침 확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8.06.30	창조협력프론트 (관민연대에 관한 상담, 제안창구)개설
07.03	제1회 창조협력포럼 참가자 약80명
09.01	제2회 창조협력포럼 약80명
10.24	제3회 창조협력포럼(개방) 약300명 양케이트 66명
12	양케이트 결과검토
2009.01.15	제4회 창조협력포럼 창조협력추진지침(안)공표 약80명
	~2.6 민간의견 모집
02.~	민간의견을 기반으로 시의회 심의
03.	지침 확정, 공표

시 당국은 민간에서의 제안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가 안고 있는 행정과제를 제시하고, 관련제안을 모집한다.

- 각 구국은 적극적으로 민간제안에 응하고, 행정과제를 추출한다.
- 공동창조추진사업본부가 민간사업자와의 교두보 역할을 하며 과제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연결해 간다.

시는 공동창조의 성공사례를 축적하여 시청내외에 소개하고, 공동창조의 메리트의 침투를 도모한다. 공동창조프론트에 들어온 제안과 공동창조 포럼에서의 의논을 연동시키는 등 복수의 제안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좀 더 나은 가치의 향상가능성을 탐색한다.

2) 창조협력 포럼 수행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창조협력사업의 기본적 방침을 책정하고 그 대상을 발굴하고 수행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창조협력 포럼을 수행하였다.

① 예산항목 및 집행 절차

- 예산은 회장비, 이벤트운영 위탁비, 강연비, 총액 150만엔 정도/1회
- 집행절차는 통상 행정지출 절차와 마찬가지로,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함
- 공동창조프론트는 집행예산 없음. 인건비와 사무비 정도
 - 실행부서예산 줄이는 것이 성과
 -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실행부서와 연계하는 것이 성과

② 포럼 결과물에 대한 제도적 지위

- 당초 포럼의 결과는 공창의 지침책정에 반영 : 공동창조프론트 설치의 필요성과 기대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 최근 포럼 결과는 직접 행정시책으로 반영시키지는 않음(요코하마시 각 부분이나 민간기업의 민관연대 활동의 참고로 함)
- 포럼에서 대두된 관민협력사업 내용은 공동창조프론트 직원들이 직접 관계부서와 연계하여 설명, 실행하도록 노력 함.

③ 운용

- 횟수 : 2008년 6회 이래 매년 4회 이상 개최. 다만, 일반에 확대하여 참가를 모집하는 오픈포럼은 년 2회 정도 개최
- 시기 : 시기는 특별히 정하여져 있지 않음(테마에 따라 수시)
- 프로그램 : 기초강연, 사례소개, 패널디스커션 등
- 의견 수렴 및 확인방법 : 특별히 의견 수렴은 하지 않음.
- 의견에 대한 처리절차 : 나온 의견을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절차는 없음
- 의견 등 포럼 결과홍보방법 : 포럼 내용을 인터넷에서 실시간 발신(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행정내부 부서 간 연계·협력 절차방법 : 포럼테마의 설정 시 부터, 테마에 관련하는 부서와 연대, 특별히 절차 등은 없음

④ 참가자

- 현장 출석자 종류와 수(학식자/전문활동가/일반시민/행정)
 - 관련 요코하마시 직원
 - 민간기업등은 테마에 따라 다양(싱크탱크, 제네콘, 광고대리점 등)
- 참가자 모집방법
 - 인터넷 상에서 모집, 찌라시 등을 공공시설 등에서 배포
 - 과거 포럼에 참가한 이들에 메일로 안내
- 사후 참가자 관리
 - 참가자의 메일링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 다음 회 이후의 개최안내를 메일로 행함.

3) 민관협력사업 발굴·상담

① 담당부서 및 구성내용(담당자의 전문분야)

- 민관연대에 관한 연수의 실시, 시청 내 정보발신(공동창조 사업 사례소개) 등을 통해 민간과 행정의 인식·시각경험의 차이를 이해하고, 민간과 함께 새로운 공공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도모
- 특히 계약, 파이낸스,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관한 지식의 축적을 도모
- 민간과 대화하면서 행정에서는 없는 민간독자의 아이디어·사고방식에 접하는 것이나 민간과의 인사교류 등을 통해 직원의 시야를 넓히고, 의식개혁이나 육성에 연계함.
- 현황 : 30여명중 20여명은 시에 입사 전 5년 이상 외부기업(홍보, 금융, 방송 등)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구성, 나머지 10여명은 외부공모(금융, 홍보, 세계은행 등 각 부문 1인씩 3인을 뽑고-시험과목에서 법률은 없음. 그들이 그들의 인적 네트워크 속에서 몇몇을 더 뽑아옴)

② 종류

- 공동창조랩·리빙랩 : 기업, 대학, NPO등과 행정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대등하고 주체적인 의론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소인수 대화의 장. 다른 시점이나 가치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과제를 공유하는 것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
- 공동창조오픈포럼 : 민간과 행정이 무대에 올라 사회적인 과제에 대해 대화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장으로 연1-2회, 수백인 규모로 실시한다. 또한

요코하마시의 민관연대의 활동을 폭넓게 주지시키는 장으로도 활용된다.

- 심층시장조사과제해결형 공모 : 요코하마시의 공유자산의 활용 등에 대해 사업검토 단계에서 민간사업자의 아이디어나 시장성의 유무를 공모에 의한 대화로 파악한다. 또 참여하기 쉬운 공모조건의 설정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지역과제나 배려사항을 사전에 전달하는 것으로 우수한 제안을 촉진한다.

③ 담당부서

- 민관연대 전문부서인 공동창조추진과와 안전마다 각각 담당부서가 연대하여 담당
- 전문분야는 안전별로, 사무·기술(건축·토목·복지 등 전문직)

※ 요코하마시는 직원내부 제안제도가 있는데 타 지자체와 다른 점은 채택되는 경우 해당 제안에 대한 인력과 재정을 지원해 준다.

예) 닛산 스타디움, 카와트라상의 경우 인원3명 뽑았음.

제2절 창조협력사업제도 특성

1. 제도 일반

1) 제도목적

창조협력사업제도의 체계에 의해 행정과 민간의 대화를 통해 민간이 갖는 아이디어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각각이 갖는 자원이나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공공만들기를 지향한다. 창조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공만들기를 지향함에 있어 견지해야 하는 제도운영의 3대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질 높은 공공서비스의 제공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맞추어 최적의 수법과 주체(사업자)가 선정되어, 사업기간 중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증모니터링을 거쳐 질 높은 서비스가 효율적·효과적·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한다.

②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

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요구를 능동적·적극적으로 민간에 개방전달하고, 민간의 아이디어나 노하우를 최대한 이끌어 내어 활용하는 것을 통해 민간(사업자)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되어 질 수 있다.

③ 요코하마 특유의 지역활성화의 추진

새로이 창출된 창조협력사업이 요코하마 경제 활성화나 기업유치의 촉진, 고용기회의 증대 등으로 연계해 나아간다. 또한, 공유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회손실을 경감하는 것과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충실 및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한다.

2) 제도운영의 원칙

창조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①대등-대화, ②목표공유, ③아이디어보호와 투명성의 확보, ④역할 분담과 책임 명확화의 4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한다.

① 대등-대화의 원칙

- 민간사업자는 요코하마에 있어 새로운 공공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헌한다.

- 시는 민간으로부터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임과 함께 행정과제를 제시하여 민간제안의 실현을 지향해 대등한 파트너로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축적해간다.
- 창조협력에 있어 대화에는 가능한 빠른 단계에서 논의를 개시하고, 시가 상정하는 결론이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민간과 시에서 과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간다.
- 한번 결정된 수법에 고착하지 말고 프로젝트의 진척에 대응하여 합리적으로 검증수정을 행하며, 기한을 정해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간다.
- 시는 논의의 결과 민간제안의 실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활동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그 이유를 명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설명책임을 다한다.

② 목표공유의 원칙

- 창조협력 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해 창조협력사업의 목표를 공유하고, 그 가운데에서 상호 메리트를 찾아내어 호혜적 관계(윈-윈관계)를 구축한다.
- 시는 중장기적인 요코하마시의 정책의 방향성(빛3js)을 명확히하고, 민간이 참여·투자하고자 하는 환경확보에 노력함과 함께 민간이 성장전략을 생각해 갈 수 있도록 시의 비전에 대한 지속성, 일관성을 확보한다.
- 민간사업자는 중장기적인 방향성 속에서 스스로의 노하우를 발휘해 비즈니스로서 무엇이 가능한가를 추구하고, 시와 함께 구체적인 창조협력사업의 구축에 노력한다.
- 민간사업자와 시는 상시 창조협력의 시점(시민·이용자의 시점, 재무의 시점, 성장발전의 시점, 지역·사회의 시점)을 공유하면서 창조협력 활동을 추진한다. 달리말해 시민·이용자에 있어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③ 아이디어 보호와 투명성 확보의 원칙

- 시는 시의 계획이나 사업성립조건 등 민간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선택기를 알기 쉽게 또 정보를 집약하여 리스트화하는 등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제시한다.
- 시는 기본적으로 개방된 과정 속에서 창조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민간의 독자적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를 도모한다.
- 민간사업자와 시는 민간 아이디어 중 보호해야만 하는 정보에 대해 협의하고, 보호해야 하는 정보 이외에 대해서는 폭넓게 사회에 공개하고, 새로운 공공의 형성을 함께 지향한다.

④ 역할분담과 책임명확화의 원칙

- 공통의 목표달성을 향해 민간과 시는 상호 갖고 있는 스킬이나 노하우를 명확히 하고, 상호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창조협력사업에 있어 상호 역할분담을 명확히 한다. 또, 다양한 사업 리스크를 상정하여 역할에 대응한 책임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한다.
- 시는 사업전체를 통해 적절한 모니터링에 의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의 실시를 도모한다. 이 경우 제3자 평가 등 가능한 객관적인 평가를 행하고, 사업의 개선이나 민간사업자가 더욱 활약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연계해 나간다.
- 민간사업자도 공(公)을 담당한다고 하는 책임감을 갖고, 지식이나 노하우를 충분히 발휘하여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제공함과 함께 사회에의 설명책임을 의식하면서 사업을 수행한다.

3) 창조협력사업의 시점

창조협력의 수행에 있어 민간과 행정은 다음의 4가지 시점을 공유하면서 사업을 추진한다.

① 시민·이용자의 시점

- 시민·이용자에 있어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 창조협력은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단편적인 행정서비스의 민간이관이 목적이 아니다. 창조협력을 통해 안전·안심, 편리성, 쾌적성, 신속성, 저렴한 요금 등 시민에 있어서 행정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지향한다.
-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 기본적으로 경쟁환경의 확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부단한 향상을 추구한다. 민간에 위임한 결과,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정체·중단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일반적인 경우 보다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재무의 시점

- 사업에서 생겨난 가치와 대비한 비용 고려. : 단순히 비용이 싸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와 대비하여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VFM(Value for Money)⁴⁾의 사고

4) VFM(Value for Money): 일반적으로 투입한 자금을 대해 가장 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하는 개념이다. 동일한 효과나 가치를 갖는 2가지 사업을 비교하는 경우 투입한 금액(이용요금 및 세금)이 보다 적은 쪽이 다른것에

를 기본으로 한다. 민간과 시는 이용자가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명확히 한다. 또 비용산출에 있어서는 시 행정측의 인건비도 감안한다.

- 사업의 생애주기 비용의 최소화 고려. : 예상되는 투입금이 소규모여도 장래 유지관리비나 운영비가 높게 들어가는 방법은 생애주기 비용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상시, 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비용 최소화를 도모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가령 계약(위탁)기간 중의 전체 비용이 적더라도 계약 만료 후에 시에 대규모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내용도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후도 포함하여 사업의 생애주기 베이스에서 VFM이 최대가 되도록 사업내용을 고려한다.
- 위험비용에 대한 감안 : 예상되는 사업비나 민간의 지불계약금액이 소규모여도 위험부담이 현저한 경우에는 시가 부담하게 되는 전체비용은 증대하고 VFM은 저하한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나 위험이 현저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감안하여 생애주기 비용으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는 위험부담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하는 인식을 철저히 하고, 위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과 시가 각각의 위험관리·부담능력에 대응해 위험을 최적 배분하고, 그것을 계약 등으로 담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 예기되지 못한 위험 발생에 의해 VFM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새로운 세입구조 고려 : 창조협력사업에 의한 지역활성화가 가져오는 세수증가효과나 토지·건물 등의 유형자산, 광고·명명권 등 소위 자산기회를 최대한으로 이·활용하여 새로운 세입을 유발하는 사업내용을 추구한다.

③ 성장·발전의 시점

- 민간기업의 성장에 연계 : 사업확보를 위해 민간이 채산성에 맞지 않는 무리한 사업을 행하려는 것은 창조협력에 의한 가치창출에 이어지지 않으며 양질의 공공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에도 이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민간에 있어서도 스스로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사업구축을 지향한다.
- 행정조직의 능력향상·혁신에 투자 : 창조협력을 통해 민간과 대화하는 가운데 행정에는 없는 민간독자의 아이디어나 사고 방식에 접촉하는 것으로 시 행정직원의 지식의 향상 및 의식개혁·혁신으로 이어나간다. 또, 계약관리의 방법이나 지적재산의 이해,

대해 VFM이 있다고 한다. 또, 같은 금액을 투자한 2개의 사업인 경우 보다 효과나 가치가 높은 쪽을 상대에 비해 VFM이 있다고 한다.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의 지식을 친숙하게 함으로써 시 행정측의 스킬의 향상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④ 지역·사회의 시점

- 지역공헌, 환경행동, 고용확보 등, 지역과의 조화 고려 : 창조협력사업이 직접적으로 불러오는 효과만이 아니라 지역공헌, 환경행동, 아동보육의 지원, 여성참여, 고용 등에 끼치는 효과를 고려하면서 지역, 사회에 있어 선순환을 만들어 내는 것을 지향한다.
- 지역경제의 활성화 연계 : 민관연대의 추진에 의해 지역에 있어 고용창출이나 시내 기업의 발전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최근 소위 퍼블릭 서포트 비즈니스로서 사회적 과제에 대해 스스로 당사자 의식을 가축, 해결해 가고자 하는 비즈니스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공(公)을 담당하는 민간이 다양화하는 가운데 퍼블릭서포트 비즈니스를 민관연대사업의 관점에서 명확히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
- 사회정세 변화에의 유연한 대응 : 사업실시 수의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간과 행정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대응하는 사업체계의 구축을 도모한다.

※ 공창추진지침 : 요코하마시 민간과 행정이 공유하는 4원칙, 4시점
4원칙

- 대등·대화의 원칙
- 목표공유의 원칙
- 아이디어 보호와 투명성확보의 원칙
- 역할분담과 책임명확화의 원칙

4시점

- ① 시민·이용자의 시점
 - 시민·이용자에게 있어 가치향상이 도모되고 있는가?
 - 양질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는가?
- ② 재무의 시점
 - 비용효과(VFM)의 최대화, Life-Cycle Cost의 최소화가 도모되고 있는가?
 - Risk Cost가 감안되어 있는가?
- ③ 성장·발전의 시점
 - 사업자의 성장축진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 행정조직의 능력향상에 기여하고 있는가?
- ④ 지역·사회의 시점
 - 지역공헌·환경·고용확보 등 지역과의 조화가 도모되고 있는가?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2. 제도운용체계

1) 창조협력사업 추진 프로세스

창조협력사업을 추진해 가기 위해서 시가 민간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대화를 통해 혁신을 이끌어내고, 창조협력사업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대화에 의해 창출되어진 사업이 더 나은 민간제안을 불러낼 수 있는 선순환을 지향한다.

이는 발상제안(Idea), 수법계획(Plan), 사업구체화(Do), 평가개선(See)의 4행정 사이클로 구성된다.

① 발상제안(Idea) 단계 : 상담·제안의 대응과 커뮤니케이션의 개시

시가 가진 과제나 비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표함과 동시에 시의 창구를 명확히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으로부터의 상담이나 제안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다.

비교적 구체적이지 않은 아이디어 단계부터 민간과 시의 대화를 개시하여 함께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을 모색하고, 수법계획의 단계로 진행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한다.

발상제안 단계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 민간의 제안과 시가 가진 과제·요구와의 매칭
-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새로운 가치창출의 가능성
- 창조협력의 시점과의 정합성
- 아이디어·정보의 보호·공개정도
- 민간과 시에 있어 각각의 메리트와 공유하는 메리트의 명확화
- 실현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과제의 확인
- 사업구체화를 지향하는 스케줄의 공유
- 발상제안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등.

② 수법계획(Plan) 단계 :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창조협력사업의 창출

창조협력사업의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민간과 시가 목표를 공유화한 위에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한다. 대화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의 채택여부, 최적의 민관연대수법을 선택하고, 타 사업자의 참여기회의 확보 등을 판단하며, 그 합리적인 이유를 명시하는 것으로 설명책임을 다한다.

수법계획 단계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 사업실시에 의한 새로운 가치창출 예측
- 시와 민간사업자의 역할분담
- 보호해야하는 정보의 범위
- 적절한 민관연대수법의 선택·체계
- 폭넓은 사업기회의 확보방안
- 발상제안자에의 인센티브 등

③ 사업구체화(Do) 단계 : 적절한 주제에 의한 창조협력사업의 구체화

창조협력사업 실시주체의 선정에 있어서는 제3자에 의한 평가도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수행하며, 가격뿐만 아니라 제안의 질,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계약협정 체결에 있어서는 역할분담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계약내용을 쌍방에서 작성한다. 더욱이 요구에 대응한 유연한 대응, 특히 우수한 사업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정리하고, 성과에 대해 적절한 리턴이 더 나은 운영을 향상해 갈 수 있다고 하는 선순환의 구축을 지향한다.

사업구체화 단계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 투명성, 객관성 있는 실시자 선정 프로세스
- 실행단계에서의 인센티브·페널티 설정
- 고용창출 및 경제효과 등 지역경제에의 배려
-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검토
- 리스크를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자에 의한 해당 리스크 분담
- 상정되어진 리스크에의 사전준비 등

④ 평가개선(See) 단계 : 안정적·효과적인 사업운영

보다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끊기지 않고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한 계약협정에 기반한 모니터링을 행하고, 제3자에 의한 평가 등 객관적인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또, 시와 민간사업자가 협력하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간다고 하는 관점에서 필요에 대응하여 시와 민간사업자와의 정보교환이나 연락모임 등의 장을 설치하고, 모니터링 수법의 개선을 행하는 동시에 보다 좋은 공공서비스의 실현을 도모한다.

평가개선단계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 정성적인 평가와 정량적인 평가의 밸런스
- 이용자 시점에서의 평가

- 환경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대화의 기회 확보
- 정기적·지속적인 효과측정과 사업개선
- 계약갱신 시 등의 충분한 사업검증과 재고
- 리스크 발생 시의 책임명확화와 이행
- 대차사업자의 존재유무
- 사업완료시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2) 추진 관련조직

창조협력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청 내 부서로서 창조협력 프론트를 두고, 창조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또한 민간사업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진행과정을 통해 관련된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제도의 확충 등을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① 창조협력 프론트

창조협력사업의 상담 및 제안창구로서 2008년6월30일 창조협력(共創)프론트를 개설하고 운용을 시작하였다. 시는 민간으로부터 제안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시가 갖고 있는 행정과제를 제시하고 제안을 이끌어내고 있다. 각 구국은 적극적으로 민간제안에 대응함과 함께 행정과제를 추출한다. 정책국 창조협력(共創)추진실이 민간사업자와의 행정간, 동시에 행정부서간 가교역할이 되어 과제해결을 향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연계하고 있다.



〈그림 2-3〉 창조협력프론트 부서 역할

한편, 창조협력의 성공사례를 축적하여 청사내외에 소개하는 등을 통해 창조협력의 메리트가 확대되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

창조협력 프론트에 올려진 제안을 창조협력 포럼에서의 논의에 연동시키는 등 복수의 제안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더 좋은 가치의 향상가능성을 도모하고 있다.

② 창조협력 포럼

민관연대를 보다 원활히 하고, 행정과 민간이 다른 시점이나 가치관에서 사회적 과제해결에 대해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해 낼 수 있는 민관교류의 장으로서 창조협력포럼을 2008년 7월이래 매년 개방형과 전문가형으로 수회에 걸쳐 주제별로 개최하고 있다.



〈그림 2-4〉 창조협력 포럼

시내·외의 기업이나 NPO(비영리 민간단체), 민관연대와 관련된 전문가, 시의 직원 등으로 구성하여 논의를 축적해 나가는 가운데 구체적인 검토테마를 설정하고, 개별 프로젝트의 창출로 이어가고 있다.

③ 창조협력 자문기구

창조협력의 활동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거나 자문을 받기 위해 전문가나 민간사업자등으로 구성되는 창조협력 자문기구를 설치한다.

자문기구는 행정과 민간의 관계있는 자, 제안에 대응(횡단적 대응책) 등 창조협력사업을 추진해 가는 가운데 생기는 다양한 과제에 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창조협력사업의 지침의 개선 등도 포함하여 시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위한 자문을 수행한다.

④ 창조협력 인재육성 등

민관협력에 관한 연수, 청사 내 정보발신(예: 창조협력사업 사례소개 등)을 통해 민간과 행정의 인식·지식·경험의 차이를 이해하고, 민간과 함께 새로운 공공만들기를 추진해갈 수 있는 인재양성을 도모한다.

특히 계약, 파이낸스,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관한 지식의 축적을 도모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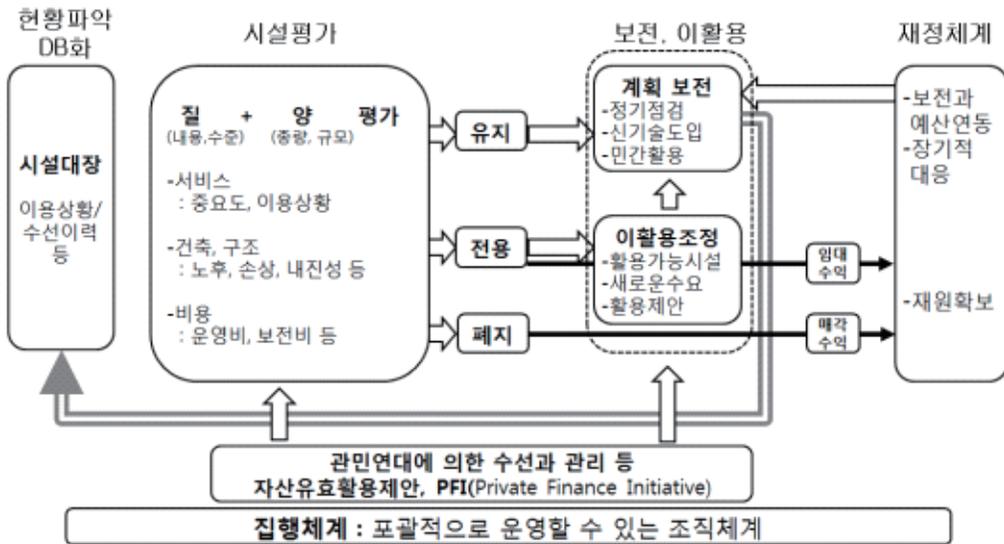
민간과 대화하는 가운데 행정에는 없는 민간 독자의 아이디어·사고방식에 접하는 것, 민간과의 인사교류 등을 통해 행정직원의 시야를 넓히고, 의식개혁 및 육성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이외에 중앙정부에 있어 각종 민관연대수법·제도의 소관부처가 달라 현 제도활용면에서 조차 충분하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PFI, 지정관리자제도 등에 대한 각 제도의 특성이나 이점의 확립, 수법적용에 있어서 환경정비 등 중앙정부 등에서의 적극적인 요청제안 등 종합적인 민관연대추진의 체계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3) 제도운영 방식 및 특성

① 창조협력 대상시설 발굴, 활용

창조협력사업의 대상이 되는 행정시설을 특정하기 위하여 시설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한다. 각각의 시설에 대해 서비스의 중요도와 이용상황,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운영비용 등의 관점에서 양적, 질적평가를 수행하고 유지 및 전용을 결정한 경우 이의 보전 및 이·활용방안에 대해 민간의 노하우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상 목록과 목표를 공개하고 이에 따른 시설관리 대상자 및 아이디어 등을 공모한다.



〈그림 2-5〉 창조협력사업 대상 시설 DB화 및 민관협력 수행 체계

이 때 시에서 정한 대상시설 및 과제에 대한 대응 이외에도 민간에서 자신들의 역량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방안이 있을 경우는

행정예 이를 제안, 상담 및 논의를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할 수도 있다.

창조협력사업과 관련되는 해당 시설의 보전 및 활용은 해당 시설의 보전 및 운용예산과 연동되며, 사업시행 이후를 포함하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 사업 재원확보 등 재정적 관점에서 검토된다.

② 창조협력 사업수법

창조협력사업 수법에는 ①민간활동 지원 등에 의한 지역활성화, ②공유자산의 활용에 의한 사업창출, ③민간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창조협력사업의 수행에 있어서는 행정에서의 과제 제시와 민간으로부터의 발상제안 모두, 행정이 제시한 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간의 대화와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사업의 체계와 내용을 검토하고 사업 목적이나 성질에 대응하여 적합한 민관연대 기반의 창조협력사업수법을 선택하거나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해당 시설의 활용과 과제해결이 모색된다.

각 사업수법별 민간과 행정 각각의 메리트는 다음 표(〈2-1〉)과 같다.

〈표 2-1〉 창조협력사업 수법별 메리트

		창조협력사업 수법의 유형		
		①민간활동지원등에 의한 지역활성화	②공유자산의 활용에 의한 사업창출	③민간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
이 점	민간	-스스로의 비즈니스 활동촉진		-공공서비스에 있어 비즈니스기회의 확대
		-사회공헌을 통한 기업가치향상		
	행정	행정과제의 해결 및 정책목표의 실현	세입증대 및 서비스 향상효과	민간의 노하우 및 기술을 활용한 효과적·효율적 서비스 제공

이러한 수법의 계획·적용·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사업수법의 특성·과제를 정리하고 개선해 가는 것과 함께 각각의 장소를 타 수법의 개선이나 보완에 활용하고, 그 외에 새로운 수법의 개발을 모색하기도 한다.

특히 시가 소유하고 있는 기존 공유자산의 유지관리 관점에서 보면, ②-1 광고사업, ②-2 명명권 ②-3 공유자산 이·활용사업, ③-2 지정관리자 등이 주요한 사업방식이라 할 수 있다. (〈표 2-2〉 참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개별 가이드라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2-2〉 창조협력사업수법별 기대효과 및 유의사항

사업유형	적용대상상황	기대효과	유의사항	관계법령 등	
①민간활동지원에 의한 지역활성화	1 민간활동지원	-행정의 노하우, 자금, 장소, 명인, 네트워크가 민간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의 코디네이터에 의해 민간사업자들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행정과제의 해결, 정책목표의 실현, 지역활성화	상호 역할분담과 리스크의 명확화	
	2 협력관계 구축	행정과 민간의 노하우, 자금, 장소, 네트워크를 상호 활용하는 것으로 상승적인 효과가 기대할 수 있는 경우(공동개발, 사업제휴 등)	행정과제 해결, 정책목표의 실현, 지역활성화	상호 메리트의 파악, 역할분담과 리스크 명확화	
	3 특구·지역재생·그 외 규제완화	규제완화, 그 외 지원조치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우	법률 등의 규제완화, 지역활성화	규제완화를 필요로 하는 구체적·객관적 설명필요	구조개혁특별구역법, 지역재생법
②공유자산 활용에 의한 사업창출	1 광고사업	민간사업자가 사유자산에 대해 광고효과를 예상하는 경우	자원확보, 경비감축	옥외광고물과 도시경관형성	요코하마시광고계재요강, 요코하마시광고계재기준
	2 명명권	시설명명권의 유효활용이 예상되는 경우	자원확보, 부수서비스제공	종래의 명칭에 대한 시민감정, 시장의 미확립	명명권 도입에 관한 가이드라인, 요코하마시 광고계재요강, 요코하마시 광고계재기준
	3 공유자산이 활용	이용가능한 토지, 시설등(공유자산)이 있는 경우	자원확보, 효과적 시설 정비, 서비스향상, 지역활성화	주민의 합의형성, 마을만들기와의 정합성	
③민간에 의한 공공서비스제공	1 PFI	공공시설등의(재)정비·운영을 행하는 경우	질의향상, 효율화, 시설의 라이프사이클 전체를 통한 토탈코스트 절감	적절한 사업규모확보, 적절한 리스크분담과 모니터링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PFI법), 요코하마시 PFI 등 기본방침·가이드라인
	2 지정관리자	공적시설의 관리운영을 행하는 경우	질의향상(이용자수요반영, 신규서비스제공), 효율화, 정보개시의 촉진, 지역 고용촉진	지정기간, 시설의 운영비전제시, 사업자인센티브의 도입, 적절한 리스크 분담과 모니터링	지방자치법, 각 시설치조례, 지정관리자제도운용 가이드라인
	3 포괄적 민간위탁	민간의 창의여지가 있고, 대상이 되는 업무의 질의 향상이나 효율화가 예상되는 경우	질의향상, 효율화	계약기간, 적절한 리스크 분담과 모니터링	

②-1 광고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시유자산을 활용한 광고효과를 예상하는 경우로 새로운 재원확보와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감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 시행시에는 주변의 옥외광고물 등과의 조화 등 양호한 도시경관형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 사업적용 가이드라인으로는 요코하마시 광고계재 요강, 요코하마시 광고계재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다.

②-2 명명권사업은 시유자산 중 시설의 명명권의 유효활용이 예상되는 경우로 재원확보 및 부수서비스 제공 등의 효과가 있다. 다만, 기존 시설명칭에 대한 시민들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아직 객관적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업적용에 있어서는 명명권도입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광고관련 요강 및 기준 등이 검토된다.

②-3 공유자산 활용사업은 이용가능한 토지 및 시설 등이 있는 경우로 재원확보 및 효과적 시설정비, 서비스향상, 지역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해당 시설의 주요이용 대상인 지역주민들의 합의 형성에 유의하여야 하며 여타 마을만들기 활동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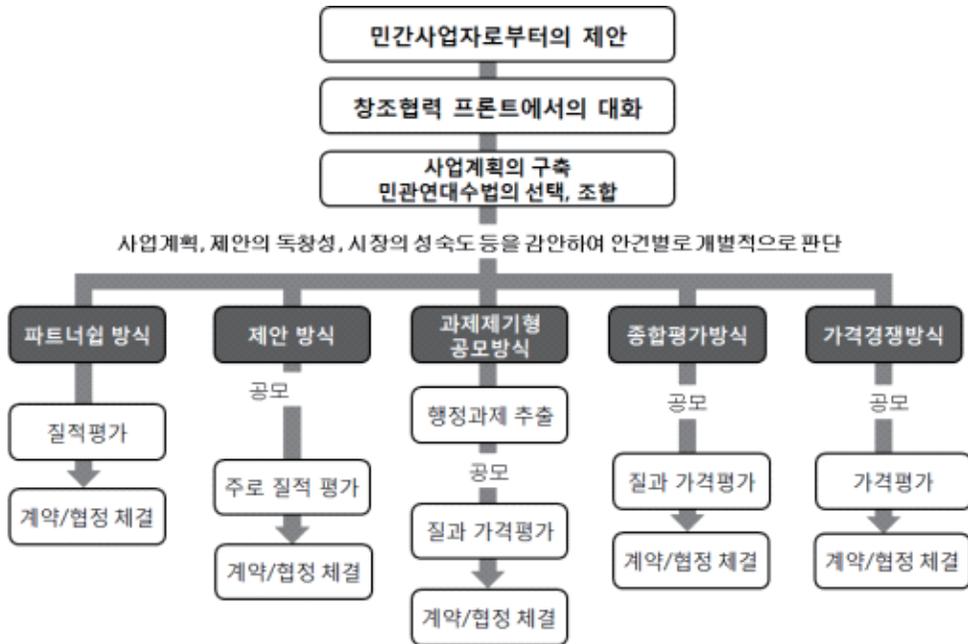
③-2 지정관리자는 많은 경우 ②-3과 유사하나 주로 건축물 등 시설공간의 유지관리에 주목한 것으로, 해당 시설의 제공서비스 질의 향상 및 효율화, 정보게시의 촉진 및 지역고용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이때 지정기간 및 시설의 운영비전, 사업자 인센티브 및 리스크분담과 모니터링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요구된다. 사업적용은 위해서는 지정관리자제도 운용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추진된다.

3. 창조협력 사업 파트너 선정방식

이전까지의 민관협력사업은 행정이 스스로의 지식이나 경험의 범위내에서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업 계획을 구축하고, 상세한 조건설정을 사전에 행한 후에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이 많지만 창조협력사업에 있어서는 민간에 의한 주체적인 참여나 발의를 구해, 행정과 민간의 대화를 통해 각자의 지식이나 노하우, 그 외 보유하고 있는 경영자원을 최적의 형태로 조합해 가면서 사업계획을 구축해 간다.

창조협력사업의 실시자에 대해서는 대화를 기반으로 VFM의 사고에 기반을 두고 질에 주목하여 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그림 2-6>과 같은 방식에서 사업계획, 제안의 독창성, 시장의 성숙도 등을 감안, 안전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사업화 절차별 방식을 구분해 보면 파트너십방식, 제안방식, 과제제기형 공모방식, 종합평가방식, 가격경쟁방식이 있다.



〈그림 2-6〉 창조협력사업에 있어 민간제안의 사업화 과정

〈표 2-3〉 창조협력 사업 파트너 선정방식별 특징

	방법	설명	적용케이스	시점	대상
공 모 에 의 한 선 정	비 공 모 파 트 너 쉽 방 식	시와 발상제안자 사이에서 계약(협정·합의서 등)을 체결, 협력사업의 실시자로 함.	-협력관계 구축등, 타인과의 경합성이 없는 경우 -제안에 고도의 독자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발상제안자가 명확치 최대 VFM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질 을 중 시	단 독
	제 안 방 식	성능 등을 제시하고, 사업계획서의 제출을 받아, 주로 제안내용의 질에 의해 심사 및 평가를 행하여 계약 등의 상대방을 특정함	제안의 독창성·창조성 등이 큰 요소를 점함, 제안내용의 질에 의해 VFM의 최대화를 도모하여야 하는 경우		
	과 제 기 형 공 모 방 식	어떤 발상제안에 의해 파악되어진 행정과제에 대해 그 과제를 제시하고, 해결책을 새로이 모집·평가함	발상제안자의 해결방법과는 다른 방법에 의해, 해당 행정과제의 해결이 예상되는 경우	복 수 (가 격 요 전 을 정 함)	
	중 합 평 가 방 식	성능등을 제시하고, 사업계획서의 제출을 받아, 가격과 가격이외의 요소(기술제안 등)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계약 등의 상대방을 선정함	제안내용의 질과 함께, 가격요소도 가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VFM의 최대화를 도모해야하는 경우(PFI나 지정관리자제도 등)		
	가 격 경 쟁 방 식	시가 사양 등을 지정하고, 제안을 받아 제안금액의 정도에 의해 계약 등의 상대방을 선정함	사업자에 의해 품질에 큰 차가 나지않는 경우, 가격만으로 결정하는 경우	가 격 중 시	불 특 정 다 수

4. 인센티브

창조협력사업에 있어 인센티브는 ① 공공에 참여하는 단계에서의 인센티브와 ② 사업실시 단계에서 보다 좋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가기 위한 인센티브의 2가지가 있다.

또 사업실시 단계에 있어 인센티브에는 우수한 실적을 올리는 경우 인센티브와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의 페널티의 2가지 측면이 있다.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에 참여하는 단계의 인센티브

- 창조협력 프론트의 설치 등 제안환경의 정비
- 제안을 받아 대등한 대화에 의한 사업계획의 가능성 확보
- 제안의 질을 중시하여 선정

②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사업실시 단계에서의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업무실적에 대응한 위탁료 등의 증액 또는 감액

(참조사례) 지역 케어플라자의 지역활동교류사업 실적 평가

지역 복지보건활동을 한층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평가점수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1시설 300만원 정도의 예산조치를 하고 있다.

평가에 있어서는 지역의 관련단체등과의 네트워크구축, 자주사업의 전개, 지역복지(보건)계획의 추진상황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이싼.

- 요구하는 사양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경고 후 계약철회 등 단계적 대응
- 자주사업에 의한 수입 등 사업자의 노력에 의한 수익증진을 인정하는 방법
- 자주사업실시 조건의 완화나 아이디어제안 등의 인정 : 시설 내에 있어 자판기 설치 등의 목적외 사용, 공모 시에는 상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업무에 관한 제안 등에 유연하게 대응
- 업적의 적절한 평가와 공표 :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 우수사업자 표창 등

5. 창조협력 사업제도 운용기준 특성

요코하마시의 창조협력사업이란 해당 도시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민간사업자와 행정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각자의 지혜와 노하우를 결집하여 새로운 사업기회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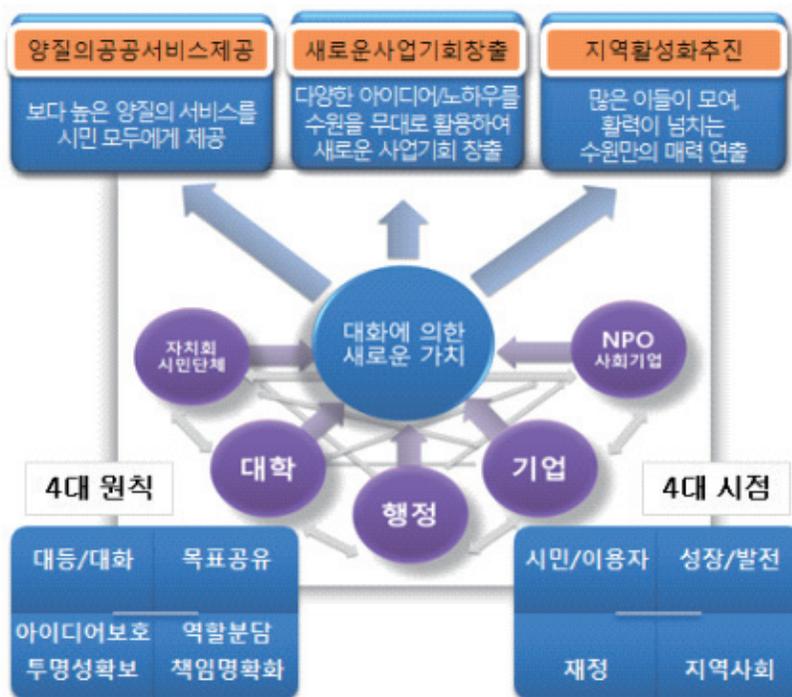
로 해당지역, 해당사회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를 위해 요코하마시는 이전까지의 민에 대립되는 공공행정이 아니라 민과 관이 서로 파트너로서 접근하는 새로운 공공만들기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여 나가는 제도체계로서 창조협력사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요코하마시 창조협력사업제도의 운용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사업자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 ②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서비스향상 및 지역활성화에 연계한다.
- ③ 민간이나 행정이 사전에 방향을 설정하고 상개가 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상호 논의를 시작, 축적하여 민관 모두의 영역에서 혁신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간다.

이의 실현을 위해 우선 행정내부에 민관협력사업 추진(상담)부서로서 창조협력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창조협력 사업의 홍보와 논의, 새로운 사업발굴, 기타 다양한 민간영역의 연계와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창조협력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련된 행정정보의 공개 및 발신(활용)체계를 보다 적극적,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림 2-7〉 창조협력사업체계 종합

특히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 목표의 공유, 아이디어의 보호와 투명성 확보, 민관역할분담과 책임의 명확화라는 제도운용의 4대원칙과 시민/이용자 관점, 성장과 발전의 관점, 재정적 관점, 지역 사회적 관점의 4대 시점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주체들 간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 양질의 공공서비스제공,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지역 활성화를 이루어 나간다.

이러한 사업체계는 수원시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제3절 창조협력사업제도 운용사례

1. 창조협력사업제도 운용사례 일반

요코하마시의 창조협력사업제도 운용사례를 보면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래 10년간 매년 신규로 추진되어온 사업의 총 개수의 합은 311개에 달하고 있다.(<그림 2-7> 참조)



<그림 2-8> 창조협력사업 연도별 신규 추진개수

대상 사업의 내용을 보면 시정책홍보 및 계몽, 최신기술의 실증실험, 행사 및 이벤트연계, 유명 캐릭터 활용, 지역문화 및 지역식품 활성화, 친환경, 기업제품홍보, 민관협력사업 발굴 등으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이 보다 다양한 세부사업으로 정리될 수 있다.

- 시정책 홍보: 방재, 아동, 육아, 교통안전, 취로
- 계몽 : 교통안전, 지역식품, 약물남용 , 에너지절약
- 실증실험: 정보통신, 노인 보조로봇 등
- 행사/이벤트 연계 : 공공행사, 기업이벤트
- 유명 캐릭터활용 : 지역명소화, 지역특성화
- 지역문화 : 지역문화자원활용 달력제작, 맨홀뚜껑 제작 등
- 지역식품 활성화 : 지역농산물 제빵제과
- 친환경 : 부채, 에너지절약, 폐가전 회수
- 기업제품홍보 : 책, 신제품 등
- 민관협력사업 발굴

〈표 2-4〉 창조협력사업 연도별 제안사업 현황

#	사업종류(제안자)
2008 6	1 인터넷지도활용제안(아후), 2 요코하마150주년행사정보게재(락천), 3 e-커머스 장애인취업지원(락천), 4 안전안심생활 포괄제휴(세븐일레븐), 5 구제교육프로그램(산모르학교법인), 6 후생노동성 교부금 활용제안고령자/젊은이 자립지원(코도라보합동회사)
2009 18	7 수영장유료활용(일본인라인챌린지협회), 8 유니버설디자인토일렛맵작성(NPO체크) 9 휴대폰활용 지역컨텐츠배포실험(테레비카나가와) 10,11 요코하마150주년 기념이벤트지원(요코하마 개항인제평단전실행위원회) 12 포괄제휴협정(로슨) 13 마을내노인우선석 프로젝트(NPO), 14공원야구장명명권(요코하마 약과대학) 15 장애인 제작 빵 사내 판매(JFE엔지니어링), 16하수슬러지 에너지화 공동연구(전원개발주식회사) 17우편사업회사의 연하기부금배분신청에 협력 어린이 마을 엑스포 개최(NPO) 18 국제협력자선바자(락천), 19 슬로푸드(지역산 야채)재팬2009개최(슬로푸드재팬 동경사무소) 20,21,22 로봇체험, 우주, 환경교육(IBM 사회공헌), 23보도교명명권(미쯔비시소고) 24음식의 중요성과 환경지식이벤트(페리스여학원대학),
2010 37	25 지역청소(모스버거 사회공헌), 26 동물원에 세그웨이5대 무상제공운용(세그웨이재팬), 27 생태교통 시범사업 전동스쿠터 요코하마시에 무상대여(카본프리컨설팅주식회사) 28 자기개발 공동검토(신일보유한 책임감사법인), 29 CO2감소교통계측시물레이션 실시(IBM 환경성 사업 응모) 30 중국에 요코하마 PR(주식회사) 31 총무성ICT지역인제사업협력(NPO), 32 150주년기념 노래 춤지원(3개 상점가), 33 먹거리 관점에서 지역활성화 후원(친타이), 34 공립병원에 공연(엠포이어 엔터테인먼트 재팬), 35국제기술협력관련 포괄제휴협정(닛코우) 36 내각부 지역사회채용창출사업 개최 지원(공익법인 기업가 지원재단), 37 광고연계 역주변 안내지도 설치(표시등주식회사) 38 고령자 편집국 프로젝트 스폰서 모집지원(NPO) 39난민캠프 학교(NPO), 40 아동청년지원협회지원(파소나)
2011 27	명명권, 캠페인(환경, 컵사용, 화재예방, 절전), 광고활용 게시판, 지역물상장려, 지역기여(회람판제작제공), 사회실험, 지역복지, 공감워크샵 홍보, 마을행사, 교육프로그램 등 (기업, 학교, NPO, 공익재단, 상점가 등)
2012 31	노인로봇 실증실험-노인복지시설(소프트원에), (방재)보도사진전-방재센터(신문사) 포괄연대협정(판매점), 화분을 사용한 녹지증진(에너지), 절전계몽부채-애니메이션홍보(신문, 영화사), 시민대상 열사병예방 세미나-자사 연구성과홍보(제약), 공정무역-중앙도서관카페-(무역), 심폐소생법 앱 공동제작(통신사), 간벌재활용합숙(가구), 공원조명(판매사), 방재대응력강화연수-연구성과 홍보(제약사), 시재정보호책자배포(판매사), 지열패드제공(건강, 에스테사), 행정정보전화부(타운페이지사), 국제회의홍보(스포츠엔터테인먼트사), 교복착용세미나(의류사), 아동육아 페스티벌-시정책홍보(신문사, 판매점), 영화 연계 지역활성화(영화사), 감사편지-보육원(우체국), 인형의집피규어전(캐릭터회사), 시립도서관장자료활용 달력(복사기회사), 맨홀디자인(마케팅사),청사창구 레이아웃 개선 실증실험(가구사), 인권계몽(영화사), 휴간일전단지 뒷면활용-시정보홍보(판매사)
2013 27	맨홀디자인상품화(디자인사), 영화촬영 예방접종 및도서관, 청소년 정책, 치매예방계몽(영화사), 절전부채(판매점), 해외방문객 무료 WiFi카드배포(통신사), 고교 ICT활용 계몽교육(마이크로소프트), 국제기술연대-siy port 정책(공업사), 선거홍보 부채(판매점), 지역물산활용 상품개발(제방사),재해협력(지도회사), 교통안전이벤트(오토바이판매사), 방재교재 감수협력-시내 유치원무료배포(출판사), 생활앱개발컨테스트(학교, 디지털회사), 시내기업제품 전시-공공시설(YBC사무국), 금연계몽(제약사), 장애인제작도시락판매 등(회사 사회공헌), 교통안전캠페인-반사재 부착 가방활용(판매사), 경제금융강좌(증권사), 산학공ppp워크샵(금융연구소, 대학, 시), 요코하마여객선컨테스트 사진활용 달력제작(복사기회사), 맥도널드패밀리셀 제작 협력-구급업 및 차량홍보(자동차회사), 민간육아EXPO에 시 육아정책홍보(이벤트회사), 시 캐릭터 홍보송 제작(에이전시)
2014 39	LED통신 실증사업및 무료WiFi환경제공-방일외국인(통신회사), 무가지에 민간연계사례 홍보(판매점), 공문서 일본어 변환시스템 구축협력연구(대학), 클라우드펀딩오픈데이터 활용 협력(ICT기업), 아동생활습관 학습프로그램(포켓몬 커뮤니케이션), 청각보조기구 실증실험(공업사), 포괄연대협정(음향회사), 교통안전이벤트(오토바이회사), 해양연수(대학), 개호의날 포럼 홍보협력(신문사), 구민행사/ 가족의 날 행사 협력(포켓몬 커뮤니케이션), 재해발생시를 상정한 하수도관 설치 조사훈련(지도회사), 구명치치 동영상제작

		협력/방재대응 책 배포/약품관리계몽(출판사), 재해용비축품(판매사), 감사달력(우체국), 관광촉진 프로 모션(운수회사), 회화 프라이버시 시스템 실증실험(전자회사), 해외방문객 무료 WiFi카드배포(통신사), 디자인맨홀 설치(제작회사), 구청 창구/집무실 레이아웃 개선(가구회사), 공공임대부동산 웹사이트 개설협력(부동산웹회사) 등
2015	46	역사적 건조물을 이미지한 제과제빵 협력(제빵회사), 아동 교통사고보호 캠페인 연대/교통안전부채(포켓몬 커뮤니케이션), 자전거 교통안전이벤트연대(자전거회사), 요코하마학 연대(대학), 시 사업 홍보부채(신문사 등), 영화촬영 감상문 콘콜, 독서활동 홍보(영화사), 회화 프라이버시 시스템 실증실험(전자회사), 방재안전-온천기업이벤트에 시 소방국 홍보, 외국인여행객 정보제공(네비회사), 안전센서 부착 가스렌지 보급촉진 위한 포스터 제공(제작사), 고령자취로지원(기업), 디자인 맨홀 상품 판매(제작사),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제작사), 장애아동 방재책자 작성배포(출판사), 소형가전 회수촉진(판매사), 육아 응원카페-지역육아 지원거점에 무카페이커피제공(카페회사), 시립도서관 소장자료활용 달력작성(후지제록스), 고령자 안심네트워크협력(판매점), 월کم베이비 프로젝트(기업, NPO), 약물남용방지캠페인(편의점), 공공자전거 인지도 향상/치환경 교통교육(학교) 등
2016	41	문자메시지 활용 주류장 이용관리 시스템(IT회사), 남녀공동계획추진 개발이벤트 연계개최(제과회사), 캐릭터를 활용한 공민연대(캐릭터회사), 포괄연대협정(회사, 요코하마스타디움, 야구단), 방재안전책(출판사), 공민연대 비즈니스모델구축 콘테스트(대학), 시활용 쓰레기분리 안내서비스 공동개발(통신회사), 국제회의 개최-관민데이터 활용추진기본법의 구현(오픈데이터 솔루션 발전위원회), 외국인 안전 체재환경 정비 세미나 개최(판매점), 방과후 사업합동등지볼 대회협찬(식품회사), 장애인스포츠지원(로타리), 출장보육이벤트협력(판매회사), 소형가전회수촉진(판매사), 건강증진프로그램 실증실험(통신사), 문화예술거점 형성지원(회사) 등
2017	39	열사병 대응 등 행정정보발신 시스템(우체국), 국제교류, 기업간 매칭을 통한 신제품홍보(제작사) 등.

출처 : 요코하마시 창조협력실 내부자료

2. 수법별 실제 사업사례

1) 광고사업

요코하마시가 제작, 배포하는 세금 납부통지서 및 각종 생활정보 및 계몽-홍보 인쇄물, 맨홀뚜껑 및 현관매트, 창구봉투, 가방 등 시 소요 물품, 시청 및 구청 웹페이지, 청사 및 시설 공간-물품-게시판, 행사이벤트, 시영지하철·버스 등을 활용하여 광고를 한다.

광고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모집한다.

〈표 2-5〉 요코하마시 광고사업 사례 일부

			
맨홀뚜껑, (주)요코하마 마리노스	인쇄물 (자동차세 납부통지서 봉투)	인쇄물 (방재/생활지도)	도서관 현관매트 (월1회 교환)

광고게재료 등은 응모 및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맨홀뚜껑이나 현관매트 등 물품제공의 경우 해당 물품을 제공하고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2) 명명권사업

〈표 2-6〉 요코하마시 명명권 운용사례 일부 (스타디움, 화장실, 공원, 쇼핑물 연결 브릿지)

			
요코하마스타디움 (주)닛산자동차	카와야도 화장실 (주)어메니티	신미나토 공원 (주)닛신-컵라면 뮤지엄파크	요코하마역 포트사이드 인도교 베이쿼터 쇼핑몰-베이쿼터 워크

요코하마 스타디움은 시설특정 모집형에 이러한 공모를 통해 (주)닛산에 닛산 스타디움으로 명명권을 판매하고 해당 좌석 등 부대시설도 닛산이 새로이 설치, 개보수 하였다. 2005년부터 매년 4.7억엔씩 5년간 지급, 총 23.5억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⁵⁾, 이후 경제상황과 회사요구에 따라 금액을 낮추어 현재 2013년 이래 매년 1.5억엔으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카나가와현 소년축구선수권대회(닛산컵)의 회장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닛산자동차 육상부에 의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육상경기를 개최, 지원하고 있다.

신요코하마역 앞에 설치된 카와야도 화장실은 제안모집형에 의한 공모방식을 통해 화장실 관리회사인 (주)어메니티에 명명권을 판매하였다. 댓가는 화장실 관련 설비를 개보수하고 일상적 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300만엔/3년간)⁶⁾

미나토 미라이 지구 해변에 위치하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신 미나토 공원은 라면회사인 (주)닛신에서 제안모집형에 의한 공모방식으로 명명권을 구입하였다. 한편 해당 공원에 컵라면 뮤지엄을 건립,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 500만엔으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총액 5천만엔에 계약하고 있다.

베이쿼터 워크는 요코하마역 포트사이드 인도교는 제안모집형에 의한 공모방식으로 (주)미즈비시 유통, 요코하마베이쿼터가 공동으로 명명권을 구입하였다. 매년 800만엔씩 2014년

5) 당시 요코하마시는 닛산 본사를 동경으로부터 요코하마로 이전유치하는 조건으로 50억엔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전략적 관계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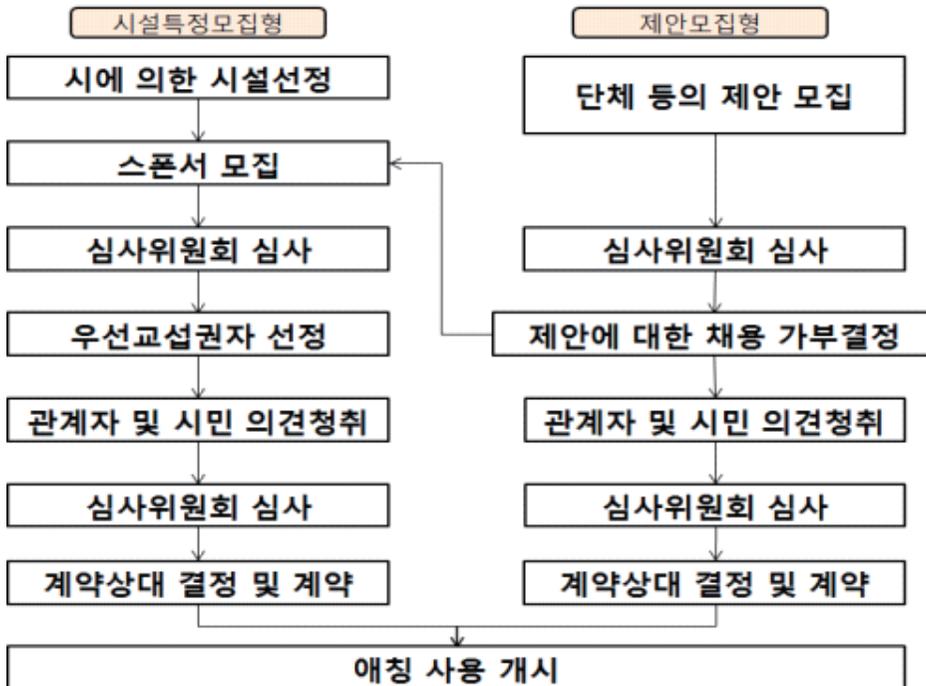
6) 요코하마 시의 공중화장실은 약 82개소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는 연간 14억원정도의 경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대부분 청소위탁비 및 광열비 및 수도비, 소모품비 등이다. 설비의 개보수 등 쾌적성을 향상하기 위해 충분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한다.

부터 2019년 까지 5년간 총 4천만엔에 계약하였다.

이외에도, 닛파츠 미쯔자와 구기장(4000만엔/년), 하마긴 어린이 우주과학관(1700만엔/년), 호시노공원 요코하마약대 스타디움(1000만엔/년), 하마야크농원(360만엔/년), 프르미야 초크레인즈 보도교(36만엔/년) 등이 명명권 계약을 맺고 있다.

〈표 2-7〉 요코하마시 명명권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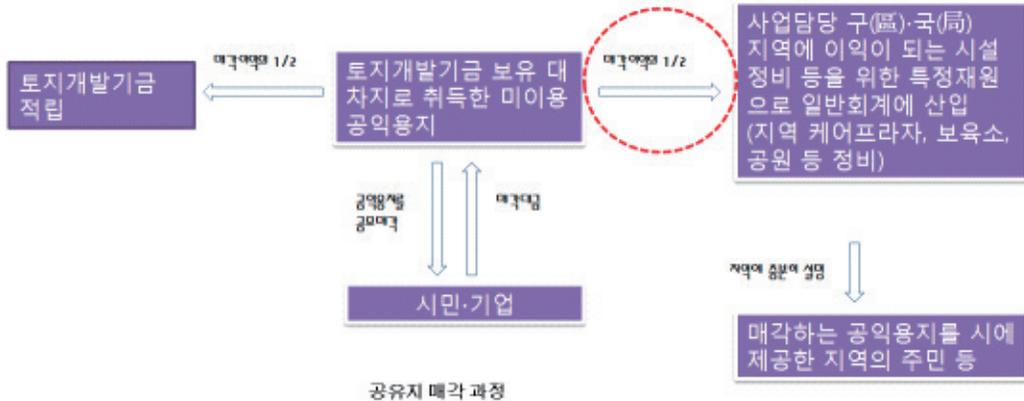
시설명	정식명칭	기산	모집방법	대가 (年액)
닛산 스타디움	요코하미국제종합경기장	2016.3.1~21.2.28	시설특정 공모	1억5천만엔
닛파츠 미쯔자와 구기장	미쯔자와공원구기장	2016.3.1~21.2.28	시설특정 공모	4천만엔
하마긴 아동우주과학관	요코하마아동과학관	2019.4.1~24.5.31	시설특정 공모	1,700만엔
요코하마약대스타디움	호시노공원 야구장	2009.8.1~19.7.31	제안 공모	1천만엔
베이쿼터 워크	포트사이드인도교	2014.12.1~19.11.30	제안 공모	8백만엔
(주)어메니타신요코하마역전 화장실 진단사의 뒷간	신요코하마복구 공중화장실	2017.10.20~20.10.19	제안 공모	관리제공 등 (3백만엔/3년간)
컵누들 뮤지엄 파크	신미나토 파크	2012.8.1~22.7.31	제안 공모	5백만엔
하마야크 농원	深谷町교류공원	2016.4.1~26.3.31	제안 공모	360만엔
크레이즈보도교	프르미야초보도교	2018.4.1~23.3.31	시설특정 공모	36만엔



〈그림 2-9〉 명명권 사용자모집방식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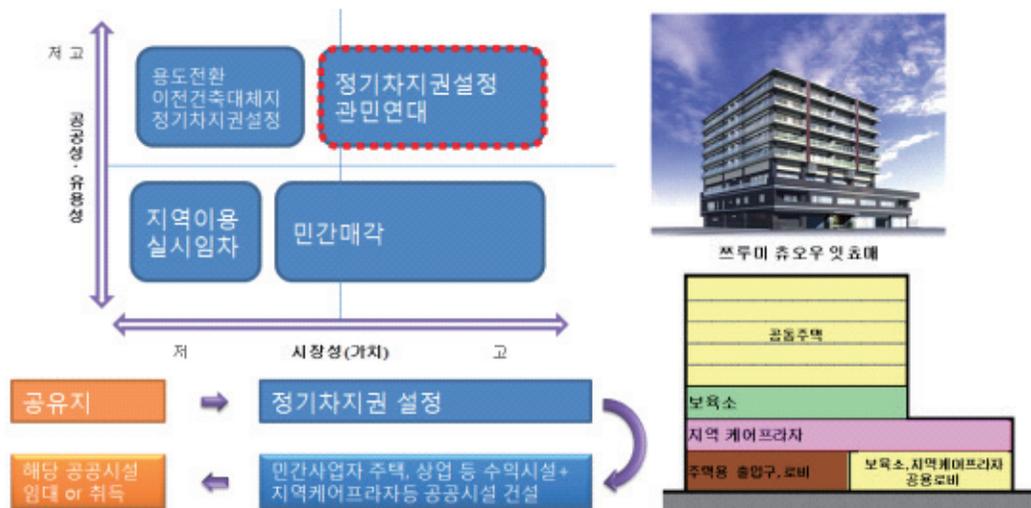
3) 공유자산 이·활용

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축 등에 대한 이·활용에는 크게 불용토지의 매각, 차지권 및 민간자본을 활용한 유희토지의 활용과 지역복지시설의 공급하는 방식 등이 있다.



〈그림 2-10〉 기존 학교용지 등 매각이익의 지역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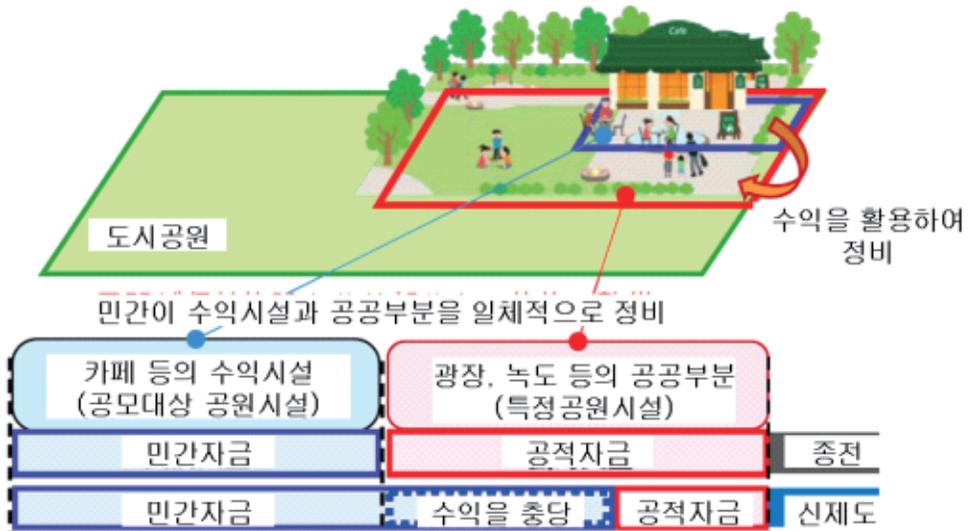
불용토지의 매각에 있어서는 해당 토지가 초기 개발취지인 공공시설용지로 사용되지 않고 민간에 매각되는 것을 고려하여 해당 토지의 매각이익의 1/2을 반드시 해당 토지가 있는 지역의 공공시설 정비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2-11〉 저미이용 토지활용 지역복지시설 공급 사례

한편 쓰루미 중앙1초매의 경우처럼 시가 소유하고 있는 저미이용 토지를 민간에게 지상권인 차지권을 매각하여 건축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케어프라자 등 지역공공시설을 공급받아 임대한다. 정기차지권과 대상 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협상에 의해 결정한다.

이외에도 현재 공원에 음식점이나 매점 등의 수익시설 등(공모대상 공원시설)과 녹도, 광장 등의 정비를 일체적으로 행하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공모설치 관리제도(Park-PFI)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정비비를 부담하고, 공원사용료를 자치단체에 지불하는 것으로 새로운 재원확보가 가능하다. 민간사업자는 도시공원법의 특례조치가 인센티브로서 적용된다.



〈그림 2-12〉 공모설치 관리제도(Park PFI)

- ※ 공모설치 관리제도의 특례조치
1. 설치관리허가 기간의 특례(10년→20년)
: 현행 설치관리 허가 기간은 최장 10년이지만 상한을 20년으로 완화하였다.
 2. 건폐율의 특례(2%→12%)
: 통상 편익시설(음식점, 매점 등)의 건폐율 2%로 하지만 공모대상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휴양시설, 운동시설등과 마찬가지로 10%의 건축율을 완화시켜준다.
 3. 점용물건의 특례
: 자전거주차장, 간판, 광고탑을 점용물건(편의 증진시설)로서 설치할 수 있게 한다.

※ 이외에도 동경 올림픽과 연관되어 도입된 도심임해부 매력향상에 기여하는 공공공간 활용제한 사업이 2017년 공모되었으며 14건의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4) 지정관리자 제도⁷⁾

요코하마시는 2003년 12월 제도를 도입하고, 2004년 7월부터 공원 등에 시범적으로 도입되었고, 요코하마시의 본격적인 도입은 2006년부터 직영관리시설을 제외하고 이전의 관리 위탁 대상을 모두 지정관리자적용 대상으로 변경하였다. 당시 시영주택의 지정관리 실시 등을 포함하여 609개 시설에 대한 지정관리를 운영하였다. 2018년 4월 현재 937개 시설에 대해 지정관리자가 지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기존의 업무위탁제도는 법률상의 계약에 의한 위탁관계였다면 지정관리자제도에서는 공모에 따른 협정기반의 관리대행으로 해당 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행정에 의한 처리와 동일한 자격 및 효과를 갖는다.

〈표 2-8〉 지정관리자와 업무위탁 제도 비교

구분	지정관리자제도 (지정관리자)	업무위탁 (수탁자)
수탁주체	민간 사업자를 포함하는 폭넓은 단체 (법인격불요, 다만 개인은 불가)	- 공공, 공공적 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 등으로 한정 - 조례로 규정한 단체
법적성격	- 관리대행 지정(행정처분의 일종)에 의해 시설의 관리권 한을 지정을 받은 자에 위임, - 자치법상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대상이 아님.	행정계약(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기반하여 개별 사무 또는 업무의 집행을 위탁
관리기준/업무범위	조례	계약에 의한 업무대행
관리자 결정	시설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의회의결 불요
관리기간	지정관리자	시설별 계약으로 정한다.
시설 관리권한	지정관리자가 할 수 있음	지방공공단체
시설의 사용허가 등	지정관리자가 할 수 있음	수탁자는 권한 없음
이용요금 처리	자기수입 가능 (요금 설정 범위는 조례로 정함)	자기수입 불가
관리에 부적당한 경우의 조치	지정을 취소하고, 관리업무의 정지명령(불이익처분)	책무불이행에 기반하여 계약의 해제 등
이용자에 손해가 생긴 경우	지방공공단체에도 책임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시설 안전책임	지방공공단체	

지정관리자제도 운용을 통해 사용허가를 포함하는 시설의 일원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며,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과 경비절감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업무의 범위, 사양 등을 상세하게 협정에 기록하지 않으면 탄력적인 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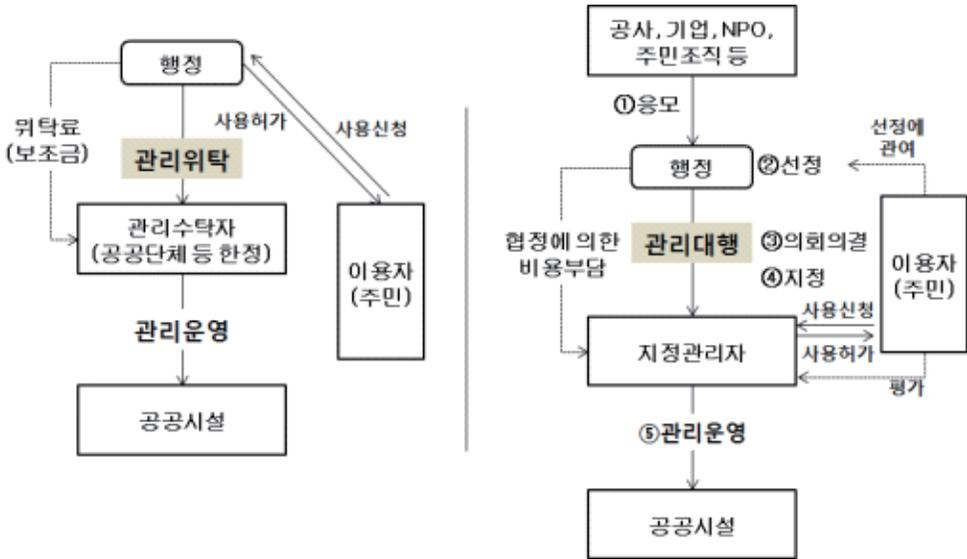
주된 차이로는 수탁주체가 공공단체가 아니라도 개인만 아니면 어떤 단체든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의 사용허가 등 전반적인 관리 및 운용권한을 갖게 되며, 해당 시설의 이용 요금을 자기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정관리자 지정대상 시설여부의 결정, 관리자 및 관리기간의 결정 등에 대해 행정이

7) 김주석, 2018:34-41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근본적으로 지정관리자는 행정계약에 의한 관리업무의 위탁이 아니라 행정과의 협약에 의한 관리대행이며, 이용자 주민들이 그 평가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림 2-13〉 관리위탁제도와 지정관리자제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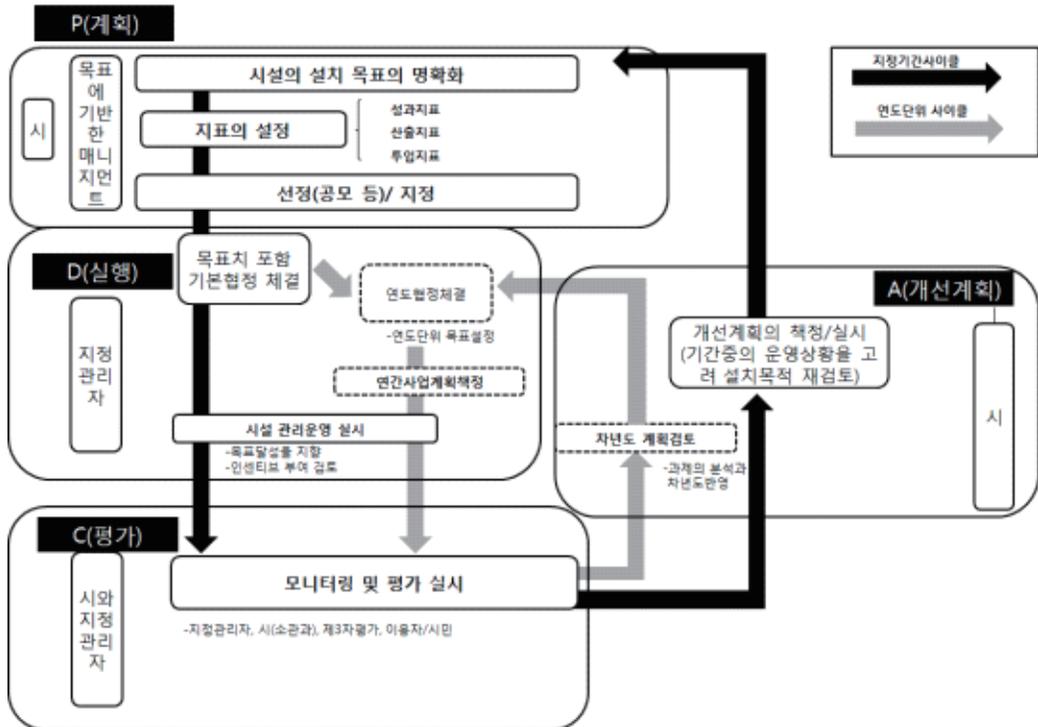
다양한 공공시설 중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기업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표 2-9〉 기업등에 의한 지정관리 가능 대규모 전문시설

시민이용시설 (대규모 전문시설)	문화시설	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홀
		요코하마미술관
		그 외 문화시설
	스포츠시설	요코하마국제물
		체육관
	복지시설	지역요육센터※
		장애자시설
		고령자시설
		그 외 복지시설
	의료시설	미나토 적십자병원
		뇌혈관의료센터에 병설하는 개호노인보건시설
		그 외 의료시설
	동물원, 공원 등	동물원
		공원 등
	기타	박물관 등
		시민이용항만시설
		바다낚시시설
		청소년시설

요코하마시는 지정관리자제도를 통해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평가방안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도를 운영해 나가면서 그 상황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가는 ‘진행관리형 제도개선 운용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림 2-14〉 지정관리자PDCA사이클



요코하마시의 지정관리자제도의 운용특징을 보면 우선, ① 조직형성 및 활동 배경(활동대상 지역)면에서 도시 내 일반적인 지역의 지역주민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시설의 이용자 중심의 좀 더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지역공동체 조직 및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룹 및 기업 등에 의해 관리운용 활동이 이루어진다.

② 시설공간의 확보 및 관리 활용 면에서 보면, 기존의 시가 운용하는 공공시설공간을 해당 시설의 고유목적에 맞추어 공모형식으로 관리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해당 시설목적에 충실하게 프로그램이 운용되며, 부가적인 소규모 경제수익활동⁸⁾이 이루어지고 있다.

8)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초기 시설에 계획되지 않았던 신규 카페, 식당 등 본격적 영업활동 사례는 없으며, 자판기설치, 공간 및 기자재 임차이용 등의 소규모 수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시설이용 및 활동주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설관리의 전문성 필요유무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다.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스포츠나 음악당 등의 시설은 해당 시설목적에 중점을 두고 전문성 있는 단체나 기업 등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공민관이나 마을회관, 커뮤니티 하우스 등 일상적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시설은, 지역주민 조직 등에 의해 관리 운용되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 활동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④ 운용재정은 시설 이용료 수입 상당액을 지정관리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이용료를 지정관리자 직접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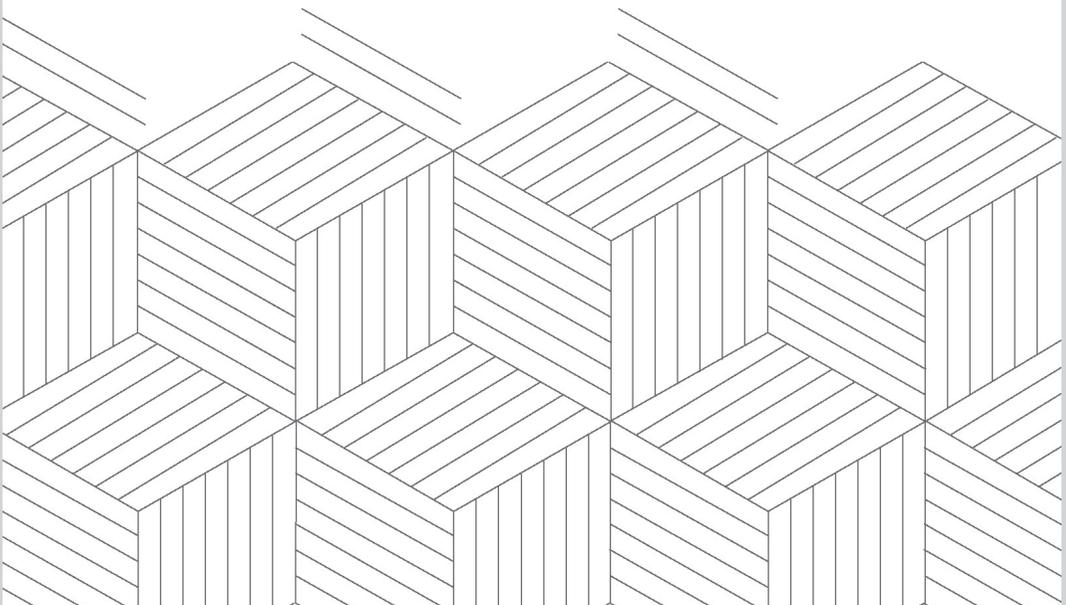
제3장

수원시 제도도입 적용 가능성 검토

제1절 수원시 주민이용 공공시설 관리운영 현황 검토

제2절 공유재산관련 법·제도 규정 검토

제3절 수원시 가상적용



제3장 수원시 제도도입 적용 가능성 검토

제1절 수원시 주민이용 공공시설 관리운영 현황 검토

본 연구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 등의 공유자산을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효율화는 물론 그 시설의 소유목적에서 보다 더 효율적인 상황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입 운용되고 있는 요코하마시의 창조협력사업제도의 수원시에의 적용가능성 및 방안을 확인하는 연구이다.

본 장에서는 수원시의 공유자산 현황과 재정현황을 살펴보고, 요코하마시의 재정상황과 비교해 보며, 앞서 정리한 요코하마시 창조협력사업제도의 운용특성을 바탕으로 수원시에 요구되는 제도운용 방향 등을 검토한다.

1. 수원시 소유 공공시설 및 재정현황

1) 수원시 소유 공공시설 현황

본 연구는 수원시의 도시관리에 있어 기존 도시공간의 유지관리의 효율화, 특히 공공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수원시는 요코하마와 달리 가용 토지가 적고, 과도한 토지보유로 인한 문제는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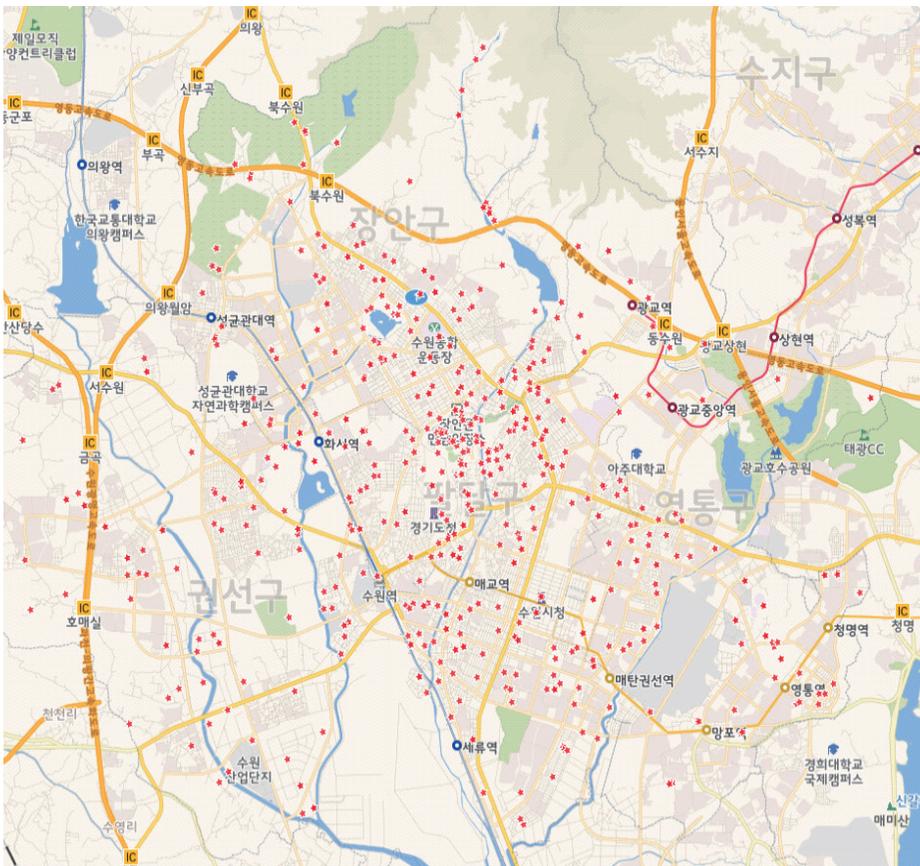
따라서 연구의 편의성을 위해 시가 소유한 공유자산 중 도로 등 공지 등은 제외하고 시민들이 향유하는 공공서비스의 직접적인 매개체가 되는 건축자산에 국한하여 그 시설현황을 파악한다.

2019년 9월 현재 수원시의 재산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로는 684개 항목이 등재되어 있다. 이들을 목적 용도별로 살펴보면, 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195개를 차지하며, 하수도 및 상수도 시설이 85개, 시청, 주민센터 등 청사가 70개, 화장실등 편의시설 67개, 문화시설이 48개, 체육시설 39개, 주거시설 34개, 업무시설 28개 도서관 25개 등의 순이다. (<표 3-1> 참조)

<표 3-1> 수원시 소유건물 현황

분류	개수
복지시설	195개
하수도 및 상수도	85개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70개
편의시설(화장실)	67개
문화시설	48개
체육시설	39개
주거시설	34개
업무시설	28개
도서관	25개
의료시설	7개
교육시설	4개
기타*	82개
합계	684개

※ 기타시설 : 창고 및 구판장, 보관소, 주차장 및 환승센터,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유통센터, 119안전센터, 쉼터, 적치장 및 폐기를 관련시설, 공원관리소 등이다.



<그림 3-1> 수원시 사유건물 분포현황

시 소유건물의 분포를 보면 수원비행장을 제외하고 시가지를 중심으로 수원시 전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그림 3-1>참조)

2) 수원시 공유재산 관련 지출현황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주민편의시설 자산은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수원시의 총자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의 증가만으로는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주민편의시설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이래 지속적으로 매년 약1%씩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경향의 지속은 수원시 재정지출에 있어 향후 주민편의시설의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재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표 3-2〉 수원시 자산변화

단위: 100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자산	11,814,886	13,872,585	14,368,350	14,555,202	15,152,635	15,296,254
유동자산	908,884	870,610	977,869	914,223	1,192,619	1,214,733
투자자산	19,208	19,882	20,115	20,273	20,259	24,249
일반유형자산	877,360	995,573	1,055,644	969,801	956,813	1,015,166
주민편의시설	1,925,722	2,082,904	2,304,608	2,492,413	2,666,529	2,908,840
사회기반시설	8,049,821	9,877,211	9,984,793	10,010,432	10,147,803	9,964,997
기타비유동	33,891	26,405	25,321	148,060	168,612	168,269

유동자산 :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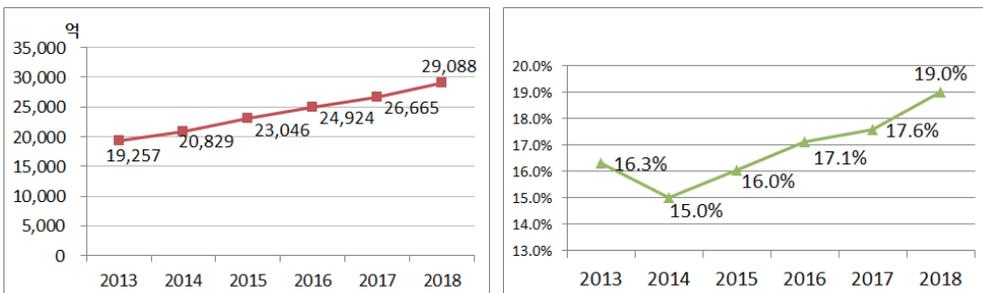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등

일반유형자산: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주민편의시설: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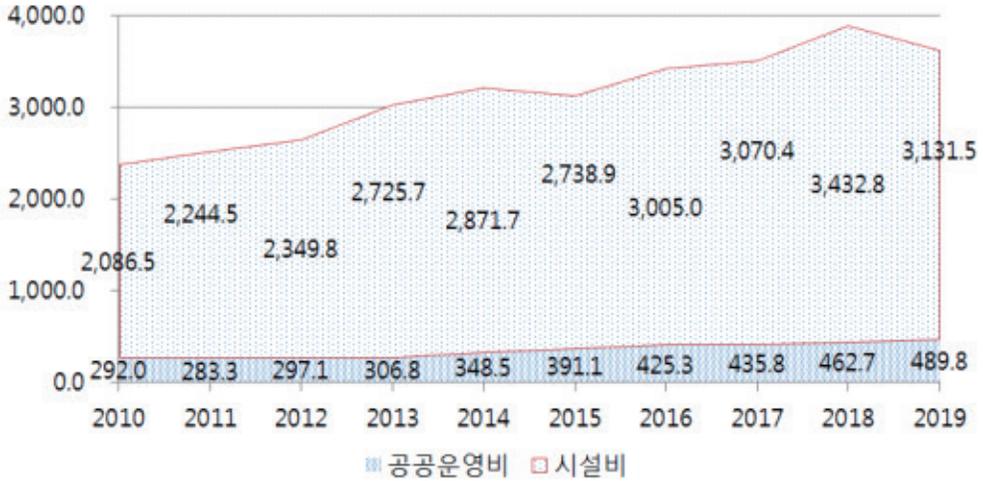
사회기반시설: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등

기타비유동자산: 보증금, 무형자산(지적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 등)



〈그림 3-2〉 주민편의시설의 자산규모 변화와 총자산 대비 비율

수원시가 공표하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⁹⁾의 최근 10년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3) 참조)



단위:억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공공운영비	292.0	283.3	297.1	306.8	348.5	391.1	425.3	435.8	462.7	489.8
시설비	2,086.5	2,244.5	2,349.8	2,725.7	2,871.7	2,738.9	3,005.0	3,070.4	3,432.8	3,131.5

〈그림 3-3〉 수원시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연도별 변동추이

따라서 수원시도 요코하마시와 마찬가지로 향후 재정의 경직화의 우려를 줄이기 위하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내 전역에 위치하는 공유자산에 대해 유동화를 포함하여 재정적 효율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9)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 중 소모품비는 공공운영비에 포함되고, 시설비에도 포함된다. 또한, 위탁비용 등에도 포함되며 자본지출등에도 포함되지만 자료수집의 한계로 여기서는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만을 대상으로 전체적 경향성만을 확인하였다.

제2절 공유재산관련 법·제도 규정 검토

1. 공유재산의 정의

우리나라에서 행정이 소유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정의 및 소유와 관리 처분 등에 대한 권한 등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한다.(<표 1-2> 참조) 한편 관리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검토되어야 한다.

〈표 3-3〉 국내법제상 재산의 종류와 구분

구분	공(公)적 소유		사(私)적 소유				
			공동소유			단독소유	
			공유	합유	총유	개인	법인
소유주체	국가	지자체	2인이상	비법인모임구성원	비법인모임구성원	개인의 이익	법인
소유목적	국가 및 공공의 이익(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유, 이용	모임목적달성	모임목적달성 (구성원은 이용권)		모임목적 달성
지분			○	전원동의	×		법인에 따라 다름
자산처분			전원동의	전원동의	총회결의		총회결의
지분처분			자유의사	전원동의	×		정관
분할청구			○	×	×		정관
관리			지분 과반수	전원동의	총회결의		법인
보존			각자	각자	총회결의		법인
사용수익			지분비율	상호간계약	정관, 규약		정관
등기			전원명의, 지분표시	전원명의, 지분표시, 합유취지	모임명의		법임명의

출처 : 김주석(2018):7, <표1-1> 국내법제상 재산의 종류와 구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의거 다음의 재산을 말한다¹⁰⁾.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로 건설 중인 것 포함.
-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로 건설 중인 것 포함
-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4조

-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지식재산(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저작권 등, 품종보호권, 기타 지식재산권)
-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채권 등 유가증권
-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각 자치단체가 가지는 공유재산의 종류를 보면 커뮤니티센터나 보건복지시설, 커뮤니티키친, 마을텃밭, 마을사무공간, 육아보육공간, 도서관, 학교와 같은 공간, 주민자치회 자금이나 마을기금 등의 재원, 역사·문화자원, 교통접근성 및 인구유동성, 노동력 및 사람, 서비스 등 모든 가치재를 아우른다.(김주석, 2018:7)

2.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관련 법제도 기준

1)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임 근거

시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과 이에 근거한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4조(공공시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 사무)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 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영상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주민편익시설 관련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교통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근로자복지·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교육·외국어마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 사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를 통해 민간에의 위탁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제144조(공공시설)를 통해 관련된 운영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수원시는 이의 위임을 받아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설치하고 있다. 다만, 위탁받은 시설의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례기준(제16조)으로는 위탁받은 자가 징수만 할 수 있고 해당 수입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직접수입으로 산정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위탁받은 내용 이외의 창의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탁자의 로고 및 CI 등 무형의 브랜드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조례제17조)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16조(사용료 징수 등)

-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수탁기관은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수탁기관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전단, 인터넷, 전화, 현수막 등) 등에는 수탁기관의 CI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시정마크만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재정법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이러한 법의 취지는 관리주체가 그 소유권과 관계없이 관리대상을 통한 수익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있어서도 민간의 관리운영 위임과 더불어 보다 자유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보다 유연한 제도운용이 요구된다.

즉, 위탁받은 시설의 사용료를 수탁자가 직접수입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추가적인 시설 활용의 자유도와 자기브랜드 홍보를 통한 브랜드 가치 향상노력을 유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제도규정을 수정·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방법

한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¹¹⁾에 관해서는 매년 예산의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제도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반드시 해당 지자체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11) 공유재산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법에서는 ① 사용·수익의 허가(법 제20조, 동법시행령제13조) 와 ②관리위탁(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이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다.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에 있어 민간 등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반입찰의 방법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연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¹²⁾ 한편, 관리위탁의 경우는 연장 시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조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자산의 허가나 위탁받은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운영은 대상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 하는 등은 금지되어 있다. 다만 관리위탁의 경우 조건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인 경우는 제3자 전대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관리위탁의 경우 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용 수익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도 있다. 또한,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명경쟁 혹은 수익계약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수익의 허가

- 사용·수익의 허가 대상자
 -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자체 출연 비영리법인
 -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
 - 국제기구 및 50개국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조례규정)
 - 공유재산 임대가능자 및 해당 재산 무상으로 사용가능자
 - 기부, 천재지변 등 사용료 면제 대상자
- 사용목적
 - 푸드트럭 운용
 - 지자체 시행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 공간으로 사용

12) 일반입찰의 경우는 1회 연장이 가능하고, 수익계약의 경우는 연장 횟수의 한정이 없다. 다만 기부행위와 관련된 경우는 (해당 기부자의 취지를 감안하여) 계약 대상기간도 10년 이내로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사용
 - 일단(一團)의 1만㎡ 이하 농경지로 해당 지자체 거주 농업인 경작 목적
 - 청사(廳舍)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
 - 해당지역 특산품·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 사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일자리정책에 따른 미취업 청년 등 창업
 -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중·지하 공작물 설치
- 기타 행정재산의 특성
 -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재산
 - 2회 유찰
 -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지기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②관리위탁

- 관리위탁 대상자
 - 특수한 기술(장비), 능력(실적)이 필요한 경우
 -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 혹은 수의계약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명입찰 가능
- 기타 행정재산의 특성
 - 주민자치회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가능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2회 유찰
 - 관리위탁료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경우 자격제한 입찰 가능
 - 지자체 장이 관리위탁 부실화 방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격제한 입찰 가능

3. 법제도 규정 검토 종합

기업과 협력을 통해 시가 소유하는 공유자산의 유효활용을 유도, 활성화는 공공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키고 해당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해당 정책의 공공성이 확보된다 할 수 있다.

특히 공유자산의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민간의 관심과 창의적 발상 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계약에 따른 고정적 수입료체계가 아니라 해당 관리운영 활동의 효율화를 통해 얻은 효율성을 수탁자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현행 수원시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에 의거 지금까지라도 이용관리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운용이 가능하다.

한편, 보다 적극적인 제도방향으로는 공유자산의 관리운영을 통한 수익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위탁받은 시설의 사용료를 수탁자가 직접수입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추가적인 시설 활용의 자유도와 자기브랜드 홍보를 통한 브랜드 가치 향상노력을 유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제도규정을 수정·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시설사용료의 수탁자 직접 수입화

우선 시설 사용료의 직접수입화와 관련해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¹³⁾에서도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있어서도 민간의 관리운영 위임과 관련하여 보다 자유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성과평가와 연동하여 다음의 단서조항과 같이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16조(사용료 징수 등)

-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수탁기관은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효율화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금을 일부 혹은 전부를 수탁기관의 직접수입으로 할 수 있다.**

1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6항 :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② 공유시설의 이·활용 완화·확대

해당 공유시설을 수탁받은 자가 해당 공유시설 본연의 서비스에 더해 추가적인 시설의 이·활용을 하는 것이 해당 시설의 효율화와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거나 본연의 서비스의 취지를 해하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데 기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¹⁴⁾하고 있다. 공유시설의 이·활용의 자유도 확대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및 브랜드 등 무형의 부가가치 창출 노력을 유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규정을 수정·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당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전단, 인터넷, 전화, 현수막 등) 등이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담당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마크 이외에 수탁기관의 CI등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와 별도로 규정의 완화와 관리운영의 자유도를 확대함에 있어 자칫 해당시설 본연의 목표를 간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의무와 연계된 페널티 규정 또한 검토될 필요가 있다.

14)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기관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전단, 인터넷, 전화, 현수막 등) 등에는 수탁기관의 CI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시정마크만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절 수원시 가상적용

1. 광고사업 적용

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 KT Wiz 맨홀뚜껑

수원시는 KT Wiz 구단으로부터 KT구단 마크가 삽입된 맨홀뚜껑을 받아 야구장 주변 및 수원화성의 장안문에서 야구장까지 이르는 도로(정조로)에 설치된 맨홀 뚜껑으로 사용하여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하고, 해당 맨홀뚜껑을 명물화 한다.



시의 맨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절감은 물론 지역성을 강화하는 <그림 3-4> KT 구단 마크 접에서, 구단입장에서는 그 지역 브랜드성강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② 도서관 소식지를 활용한 도서증서

수원문화재단 소속 바른샘도서관은 자체 소식지인 '월간 바른샘'을 발간하고 있다.



<그림 3-5> 월간 바른샘, by바른샘도서관

월간 바른샘 소식지의 반면정도를 할애하여 '이달의 서적' 코너를 신설하고, 이를 출판사나 문고와 연계하여 해당 기업에서 광고하는 책을 광고하고 해당 도서 등을 기증받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매일 인기서적을 무상으로 공급받고, 기업입장에서는 타켓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어 상호 이익이 있다.

③ 수원화성 행궁동 행리단길을 특화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전시장화

최근 젊은이들의 데이트 코스로 회자되고 있는 행궁동의 신평장안동 일대에 형성된 행리단길 구역에 대해 수원산업단지의 LED조명 회사등과 연계하여 최신 조명거리를 계획 설치하고 해당 조명에 관련 기업홍보 장치 등을 적절히 설치함으로써 생활속 조명 전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만하다.

이러한 방식은 옥외광고물법상의 문화재보호구역에서의 광고게시물 제한을 고려하여 그 크기와 형식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이는 해당 지역 브랜드를 더욱 강화하고, 수원 내 조명기업에 대한 브랜드 강화 모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명명권 적용

① 화장실

수원시는 미스터 토일렛 심재덕 시장을 거치면서 세계적인 화장실 문화를 선도해온 도시이며, 수원시 곳곳에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특색있는 쾌적한 공공화장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3-4〉 수원시 화장실 사례

			
반딧불이 화장실	광고 향아리 화장실	만석공원 화장실	광고 중앙공원 화장실

그러나 수원시의 화장실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재산상의 관리는 공원녹지사업소가 수행하고 있으며, 화장사업소는 명목상 관리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관리는 각각 개별 구청 환경위생과, 생활안전과, 하수관리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화장실별로 외부용역을 주고 있는데 화장실이나 위생관련 내역을 따로 분류해서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며, 통상적으로 해당 화장실이 부속된 공원 및 시설 등의 관리와 연계하여 용역을 주고 있다.

- 남문시장 안내센터 관리용역 비용이 0,000만원이며, 그 옆 화장실 관리비용도 포함
- 현충탑 시설관리 용역비용이 0,000만원이며, 그 옆의 화장실관리까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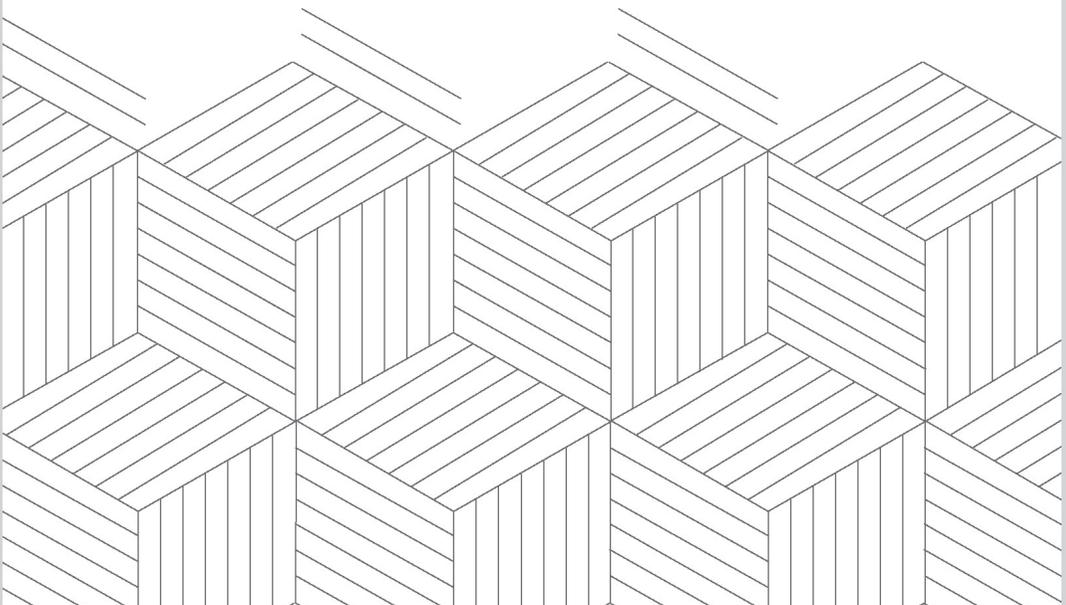
한편, 화장실 관리 전문회사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아직 뚜렷한 화장실 관리 전문회사가 대두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수원시는 관내의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용역을 통합운영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화장실 전문 관리업체를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때 상기 사례와 같이 독립적으로 설치된 화장실들을 해당 업체 브랜드명과 통합하여 명명권의 시범 사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수원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장실 문화운동을 구체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협동조합 형식의 토탈 화장실 업체 등의 회사를 육성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공사에 화장실 관리 전문부서를 두고 이와 연계하여 사업을 확장해 가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제4장 결론

제1절 종합
제2절 정책제안



제4장 결론

제1절 종합

본 연구는 한정적인 재정환경하에서 날로 증대되는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적, 양적 요구 증대에 부응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적 방안으로서 민관협력의 도시관리 체계 중 기업과 행정의 협력에 관한 것이다.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건축물 비중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기존 건축물등 공공자산의 효율화를 넘어서 자산화 관점에서 새로운 재정적 이익을 창출해 가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다.

즉, 기초자치단체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비유동자산 등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경제활동 주체인 기업등과의 연계를 통해, 민간의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행정서비스를 효율화할 수 있는 정책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유지관리에 있어 비용감축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해당 행정자산의 목적과 유지관리 형태 등을 민간의 경제적 이익활동 등과 연계, 재해석하여 해당 자산에 대한 경제적 활용도를 증대시켜, 새로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방안을 검토,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시 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의 공공시설과 연계된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 및 지역브랜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이제까지 행정의 재정적 부담 대상으로 간주되어 온 공공시설물을 통해 오히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방안을 모색 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구별되는 본 연구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정책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보다 앞서 현장에서 시도되고 있는 요코하마의 창조협력사업 제도 사례를 살펴보고 그 제도 체계와 운용특성 등을 정리하여 제도의 주안점을 확인하였다. 이후 수원시의 공공시설 현황 및 제도환경을 고려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 적용을 모색할 수 있는 사업예제를 제시하였다.

요코하마시의 창조협력사업이란 해당 도시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민간사업자와 행정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

히면서 각자의 지혜와 노하우를 결집하여 새로운 사업기회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해당지역, 해당사회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를 위해 요코하마시는 이전까지의 민에 대립되는 공공행정이 아니라 민과 관이 서로 파트너로서 접근하는 새로운 공공만들기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여 나가는 제도체계로서 창조협력사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요코하마시 창조협력사업제도의 운용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사업자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 ②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서비스향상 및 지역활성화에 연계한다.
- ③ 민간이나 행정이 사전에 방향을 설정하고 상개가 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상호 논의를 시작, 축적하여 민관 모두의 영역에서 혁신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간다.

이의 실현을 위해 우선 행정내부에 민관협력사업 추진(상담)부서로서 창조협력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창조협력 사업의 홍보와 논의, 새로운 사업발굴, 기타 다양한 민간영역의 연계와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창조협력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련된 행정정보의 공개 및 발신(활용)체계를 보다 적극적, 개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특히 대등한 입장에서의 대화, 목표의 공유, 아이디어의 보호와 투명성확보, 민관역할분담과 책임의 명확화라는 제도운용의 4대원칙과 시민/이용자관점, 성장과 발전의 관점, 재정적 관점, 지역사회적관점의 4대 시점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주체들간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 양질의 공공서비스제공, 새로운사업 기회창출, 지역활성화를 이루어 나간다. 이러한 사업체계는 수원시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수원시의 공유자산 특히 건축자산현황 및 그 유지관리 관련 재정현황을 보면 향후 재정의 경직화가 우려되는 사항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요코하마시에 보여진바와 같이 시가 소유한 공유자산에 대해 유동화를 포함하여 재정적 효율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법제도 환경을 보면, 기업과 협력을 통해 시가 소유하는 공유자산의 유효활용을 유도, 활성화는 공공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키고 해당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해당 정책의 공공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유자산의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민간의 관심과 창의적 발상 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계약에 따른 고정적 수입료 체계가 아니라 해당 관리운영 활동의 효율화를 통해 얻은 효율성을 수탁자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현행 수원시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에 의거 지금이라도 이용관리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운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방향으로 위탁받은 시설의 사용료를 수탁자가 직접수입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추가적인 시설 활용의 자유도와 자기브랜드 홍보를 통한 브랜드 가치 향상노력을 유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제도규정을 수정·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시설사용료의 수탁자 직접수입화 관점에서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16조제3항에 ‘시설 효율화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금을 일부 혹은 전부를 수탁기관의 직접수익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문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동 조례 제22조(성과평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된 성과평가를 위한 별도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상벌 등의 조치를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상벌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도록 한다.

해당 조문의 수정예시는 다음과 같다.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수정안)

제16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시설 효율화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수탁기관의 직접수익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위원회 심의를 할 때 반영하여야 하며,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과평가의 절차와 방법은 평가 대상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혹은 벌칙을 부여할 수 있다.**

공유시설의 이·활용완화·확대 관점에서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제2항을 ‘②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당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활용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동조제6항을 ‘⑥수탁기관은 각

종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전단, 인터넷, 전화, 현수막 등) 등이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당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마크 이외에 수탁기관의 CI등을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 조문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수정안)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당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전단, 인터넷, 전화, 현수막 등) 등에는 수탁기관의 CI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시정마크만을 사용할 수 있다.)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담당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마크 이외에 수탁기관의 CI등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별도로 규정의 완화와 관리운영의 자유도를 확대함에 있어 자칫 해당시설 본연의 목표를 간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의무와 연계된 페널티 규정 또한 반드시 삽입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정책제안

① 창조협력사업을 위한 통합적 제도체계 구축

수원시의 공유자산을 활용하여 재정적 안정성과 공공서비스 효율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창조협력사업제도를 도입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규정의 수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제도의 통합적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 창조협력부서 설치 : 민관협력의 도시관리를 총괄하며, 창의적 사고와 통합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행정의 부서간, 행정과 민간 사이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시장직속의 창조협력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 창조협력 포럼 설치 : 창조협력사업은 창의적아이디어와 상호이해가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폭넓은 참여가 우선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모임의 전문성과 개방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심도있는 논의와 다양한 집단의 폭넓은 논의가 양립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전문가 포럼과 특정주제별 개방형 포럼이 설치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 창조협력사업 가이드라인 및 운영지침 수립 : 창조협력사업은 행정자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기회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자칫 공공성이 특정 개인의 이익으로 전용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요구된다. 그러나 창조협력사업은 궁극적으로 행정이 수행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재정을 효율화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민간의 노하우와 역량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창조협력사업에 있어서 운영지침과 가이드라인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정보발신과 민간에의 대응, 민간에의 홍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등을 중심으로 다루어야 한다.
-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수정, 보완 : 제도운용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으로 창조협력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킬수 있는 활동 및 역량정도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적절히 반영된 규제유도 제도로써의 제도규정의 수정, 보완이 요구된다.

② 지역 특성의 유형화, 구체화 노력

창조협력사업을 통해 현재 수원시가 갖는 개별 지역의 특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야구장주변의 스포츠 명소화, 행궁동 주변의 젊음과 신기술산업, 보행과 문화, 전통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심 속 데이트 명소화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도시관리정책에 있어 언제나 지역 특성화와 활성화가 정책의 기본적 목표라는 것을 항상 견지해야 한다.

③ 공공화장실을 활용한 화장실 선도도시 위상 확립

수원시가 경기도내 수원에서 나아가 세계도시로서의 위상을 구축함에 있어 새로운 요소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수원이 가지고 있던 위상을 명확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수월한 수업이기도 하다.

십재덕 시장 이래 구축되어온 화장실 문화 선도도시 수원의 위상을 기 조성되어 있는 수원 시내 공공화장실을 활용한 창조협력사업을 통해 다시 한번 문화운동으로서 구축해 나가는 것도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강은숙, 김종석(2016)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 커뮤니케이션북스:서울
- 김건(2017), 지역자산을 커뮤니티 소유로, 영국의 지역공동체 입찰권리제도, 건축과 도시공간, 건축 도시공간연구소, 통권26호:70-75
- 김아름(2015),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과 고령거주자의 근린활동 및 사회적관계망과의 영향관계 연구: 서울시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연남동, 북가좌동)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옥연, 김주진(2015), 행복주택지구의 공공시설 운영관리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86권, pp.33-58
- 김원희(2015), 기업의 공연장 명명권 후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일영, 신중진(2018),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주민역량강화에 미친 영향: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9권 1호, pp.83-100
- 김주석(2017), 동단위 협력적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수원시정연구원.
- 김주석(2018), 지역공동체에 의한 지역·공공시설 관리·운영, 수원시정연구원.
- 대동계(2018),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개선방안, 수원시정연구원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사업
- 마스카와 유지, 코마츠 유키오, 이상준, 히라이 켄지(2010), 네이밍라이즈(시설명명권)의 실태조사 : 공공시설 시설유지관리와의 관련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30(1): 301-302.
- 맹다미, 정남중, 백세나(2015),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보고서
- 박원희(2017),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공동체 활동 지속성 및 사회적 관계망 영향분석: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완료지구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창배, 김광현(2016), 일본 공공문화시설 계획에서의 주민참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9권 1호, pp.141-150
- 배유진(2019) 협동조합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1-8
- 성순아, 오후, 황희연(2015),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활동이 지속적 참여 동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청주시 사직2동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0(4):393-406

- 안현찬, 조운정(2017), 서울시 공동체공간 지원사업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 양준호, 민윤기, 이희환(2019) 인천의 도시공간과 커먼즈, 도시에 대한 권리, 보고서:파주시,
- 양진우(2015), 부산시의 공공시설 명명권제도 도입의 필요성, 부산연구원 BDI정책포커스 286:1-12.
- 오현주(2015),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 주민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 마을의 공간적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태영, 문주영(2011), 명칭부여권에 대한 법적고찰-스포츠 시설·프로구단과 관련한 명칭부여계약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14(3):11-36
- 이상준, 쓰즈미 히로키, 히라이 켄지, 코마츠 유키오(2010), 일본의 공공시설 매니지먼트의 현황과 문제점,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0(1):281-282
- 이상준, 쓰즈미 히로키, 히라이 켄지, 코마츠 유키오(2013)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산전략책정을 위한 연구-전시시설을 대상으로 한 활용방침 평가수법의 제안-,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33(2):725-726.
- 이상준, 쿠마타토모푸미, 코마츠 유키오(2007), 공공시설의 유지관리현황조사연구- 동경도내 26시의 커뮤니티시설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7(1):709-712
- 이소영(2016), 커뮤니티 워크와 사회적 자본과의 순환적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 삼덕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지, 최현선(2015), 도시 커뮤니티 형성 과정의 탐색: 서울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84권. pp.75-94
- 이정훈, 신기동, 한지혜, 조진현(2019), 젠트리피케이션 대안 - 지역자산의 공유재화, 경기연구원 이슈&진단371:1-26.
- 이주원(2012), 프랑스 파리의 지역관리기업을 가다. 은평시민신문, 2012.06.26. <http://www.e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403>
- 이춘경, 박태근(2005), 공공시설 유지관리 및 이력정보 관리 현황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415-418
- 장교식(2001), 공공시설의 관리와 주민의 이용권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14집, pp.215-236
- 장성화, 오병록, 김귀진(2018) 공공 유허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 전대욱(2015), 사유화된 공유재를 나눔의 거버넌스로, 주민자치, (사)한국자치학회, 통권 40호, pp.28-33
- 전대욱(2016), 주민자치기구의 공유자산 확보와 관리, 주민자치, (사)한국자치학회, 통권54호, pp.28-29
- 전대욱, 최인수, 김건위(2016), 지역공동체 소유권(community_ownership)과 자산화 전략, 한국

- 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204-221
- 정철(2011), 전남지역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활용 방안, 전남발전연구원
- 조동열, 정태갑, 이춘경(2012), 공공시설 유지관리 실태조사 기반 공공FM 활성화 방안:K공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2(2):585-586.
- 최문기(2012), 충유에 관한 규정의 입법론, 사회과학연구 제20집 4호, pp.429-457
- 최여정(2013), 공연장 네이밍라이즈 스폰서십에서 단순노출효과와 조화가설이 기업 브랜드 연상강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원식, 나혜숙, 서명배, 정성운, 임종태(2010), 공공시설 자산관리 정보화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0(11):68-79.
- 최인수(2015), 상호부조·호혜·인본주의 경제시스템 절실, (사)한국자치학회, 통권 40호, pp.17-22
- 하경환(2017), 마을의 재도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의 의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매뉴얼-마을-, 서울특별시 pp.310-333
- 한상욱(2007), 효율적인 도시 정비 및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한승욱(2017)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산화 방안, BDI정책포커스 제325호(부산연구원): 1-16
- 허윤선, 안현찬(2015), 주민참여형 공공시설 공간개선 및 자율관리 방안연구 -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사업을 사례로.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다음백과(2018),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100.daum.net
- 대법원 판례(1962), 조합, 협동조합, 공공조합, 익명조합, 노동조합, 대법원 1962.7.26. 62다 26
- 매경시사용어사전(2018), 하이로드(high road), dic.mk.co.kr
- 서울시(2014), 흥제동 개미마을 기초조사연구
- 서울시(2015),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현황 및 과제, 서울시
- 서울시(2018),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매뉴얼-마을-
- 성북구(2015), 성북구 정릉동 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 성북구(2017), 성북구 정릉동 삼덕마을 공동이용시설 건립에 따른 자치구 관리위임 추진계획
- 행정안전부(2013),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우수사례
- 행정안전부(2017), 지역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집
- EBS(2014) 지식채널e, 경제시리즈 시즌3-10부 공유지의 희극, <http://home.ebs.co.kr/jisike>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18호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지방재정법, 시행 2018. 6. 28., 법률 제15528호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18. 9. 28.,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823호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 2017. 9. 27.,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706호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4. 8.,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519호

〈일문 자료〉

久保田 準(2011.3), 제2스테이지를 바라보는 지정관리자제도, 조사연보, 요코하마시, 통권158호, pp.21-24

요코하마시 도시경영·행정운영 조정위원회(2009), 요코하마시 지정관리자제도 운용가이드라인의 골자에 대해, 공창추진사업본부

일본 지방자치법

총무성통지(2003), 총행행 제87호, 2003.7.17. 일본

室井力 외 편저(1990), 현대국가의 공공성분석, 일본평론사:동경

山川雄巳(1999), 공공성의 개념에 대해, 일본공공정책학회연보, pp.1-36

黒崎羊二 외(2002), りらいふ연구회, 밀집시가지의 마치쓰끄리-마치의 내일을 편집한다-, 학예출판사:쿄토

蓑原敬(2000), 도시계획의 도전-새로운 공공성을 추구하고, 학예출판사:쿄토

요코하마시(2009), 창조협력추진의 지침-창조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공만들기를 지향하며-, 요코하마시 정책국 창조협력 추진실 창조협력 추진과

요코하마시(2010), 요코하마시 자산활용 기본방침-보유토지의 활용, 감축에서 자산의 유효활용추진으로-, 요코하마시 재정국 관재부 자산경영과

요코하마시(2011), 요코하마시 재정보고서

요코하마시(2015), 요코하마시 공공시설 관리 기본방침, 요코하마시 재정국 공공시설·사업 조정과

요코하마시(2018), 요코하마시 지정관리자제도 운용 가이드라인

〈영문 자료〉

Hardin Garrett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Vol. 162, Issue 3859, pp. 1243-1248

Localism Act 2011,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1/20/introduction/enacted>

Lewis Mike, Dan Swinney(2008), Social Economy? Solidarity Economy? Exploring the Implications of Conceptual Nuance for Acting in a Volatile World, SERC 3 Research Results, Reports & Papers, Athabasca University Library & Scholarly Resources.

Pearce John , Alan Kay(2003), Social Enterprise in Anytown,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London

<http://mcsence.co.uk/>

<http://www.apufives.org>

<http://www.hvv.org.uk/>

| 부 록 |

수원시 소유 공공건물 현황(2019.7기준)

순번	재산명	재산관리관	건물용도	분류(10.04)
2	상수도 자재창고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	창고시설	기타
3	수원시립전문요양원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4	장안구 파장동주민센터	장안구 행정지원과	공공용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5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	미술관사업소 수원미술전시관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시설
6	파장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7	지지대화장실(효행공원)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편의시설
8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사무실	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타	업무시설
9	세일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10	파장문화복지센터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11	기존 청사 리모델링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복지시설
12	파장동 방법기동순찰대 사무소	장안구 행정지원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13	시립파장어린이집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기타	복지시설
14	파송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15	일림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16	향아리화장실	장안구 환경위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17	아마추어예술단체연습실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18	수원예총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19	SK청솔노인복지회관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20	행복한집(아동복지시설)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	복지시설
21	수원휴먼주택	도시정책실 도시재생과	공동주택	주거시설
22	주거복지사업관련매입주택	도시정책실 도시재생과	공동주택	주거시설
23	청솔노인복지회관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24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25	장안구 정자2동주민센터	장안구 정자2동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26	정자2동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27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28	기로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복지시설
29	한양연립	경제정책국 회계과	공동주택	주거시설
30	장수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31	정자1동어린이집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32	종합자원봉사센터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33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34	장안구 정자1동주민센터	장안구 정자1동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35	정자1동 동대본부 창고	장안구 행정지원과	기타	기타
36	정자1동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	복지시설
37	정자1동청사 별관(경로당)	장안구 행정지원과	공공용시설	복지시설
38	정자공원 관리사무소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업무시설
39	복수원지식정보도서관	도서관사업소 복수원도서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도서관
40	복수원도서관	도서관사업소 복수원도서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도서관
41	수릉이화장실(정자공원)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42	장안구 정자3동주민센터청사	장안구 정자3동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43	천천화장실(천천3공원)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편의시설
44	수원에스케이아트리움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시설
45	해우재	환경국 청소자원과	공공용시설	편의시설
46	지지대 쉼터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편의시설
47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과	단독주택	주거시설
48	이화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	복지시설
49	이목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노유자(노인및 어린이)시설	복지시설
50	해우재 문화센터	환경국 청소자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51	청개구리화장실(밤밭청개구리공원)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공공용시설	편의시설
52	울전화장실	장안구 환경위생과	공공용시설	편의시설
53	소규모(밤밭)노인복지관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54	울천동종합문화복지센터	장안구 울천동	문화 및 집회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55	장안구 울전동주민센터청사	장안구 울천동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56	울전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57	수원시 양궁장(울전배수지 내)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운동시설	체육시설
58	수원시양궁장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운동시설	체육시설
59	점터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60	일월도서관	도서관사업소 복수원도서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도서관
61	일월공공도서관	도서관사업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도서관
62	꽃뫼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편의시설
63	근로자복지관	경제정책국 노동정책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64	영화동 벽산아파트 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	복지시설
65	달맞이화장실	화성사업소	-	편의시설

		문화유산관리과		
66	화성열차임시차고지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	- -	기타
67	영화동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노유자(노인및 어린이)시설	복지시설
68	영화동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6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반번지 241-번지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업무시설	복지시설
70	장안구 영화동주민센터청사	장안구 영화동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71	영화동 복합문화공간	도시정책실 도시재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72	장안공원화장실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73	수원시노인회관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	복지시설
74	화흥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75	화서문화장실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	편의시설
76	영화어린이집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77	동부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78	영화동 다목적회관	장안구 영화동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복지시설
79	영화서부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80	영화서부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81	영화서부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82	화성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83	송죽동 솔대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84	만석공원 테니스장 관리사무실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운동시설	체육시설
85	중앙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86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
87	일왕저수지 수질정화시설	환경국 환경정책과	공공용시설	기타
88	제2야외음악당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시설
89	만석배드민턴전용경기장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운동시설	체육시설
90	송죽동 안심마을 주민행복쉼터	장안구 송죽동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91	미술전시관	미술관사업소 수원미술전시관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시설
92	슬기샘도서관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도서관
93	교구정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편의시설
94	게이트볼 휴게시설	장안구 녹지공원과	기타	편의시설
95	연꽃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편의시설
96	만석공원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97	장안구 송죽동주민센터청사	장안구 송죽동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98	대추골도서관	도서관사업소 북수원도서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도서관
99	대추골도서관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	기타	도서관
100	수원휴먼주택	도시정책실 도시재생과	공동주택	주거시설
101	조원1동사무소_미화원막사	장안구 조원1동	제1종 근린생활시설	기타
102	장안구 조원1동주민센터청사	장안구 조원1동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103	보훈어린이집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공공용시설	복지시설
104	조원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105	수원시종합운동장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운동시설	체육시설
106	수원시체육회관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체육시설
107	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운동시설	체육시설
108	수원야구장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운동시설	체육시설
109	아스팔트콘크리트	환경국 환경정책과	운동시설	체육시설
110	송원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111	수원휴먼주택	도시정책실 도시재생과	공동주택	주거시설
112	장안구 조원2동주민센터청사(노인정포함)	장안구 조원2동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113	수원시 장안구청	장안구 행정지원과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114	장안구보건소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업무시설	의료시설
115	장안종합구민회관	장안구 행정지원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116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화장실 및 쉼터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기타	체육시설
117	수원시 환경성질한 아토피센터	환경국 환경정책과	공공용시설	의료시설
118	연무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노유자(노인및 어린이)시설	복지시설
119	연무동주민센터	장안구 연무동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120	경기도수원시장안구연무동 일반번지 193-411번지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단독주택	주거시설
121	창훈대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122	연무동 유천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123	창용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124	수성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125	장수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126	연무동 공영주차장	안전교통국 도시교통과	기타	기타
127	연무동 문화센터	장안구 연무동	문화 및 집회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128	동문밖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129	수원어린이집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130	연무사회복지관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131	연무동 신미주아파트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132	상광교경로당	장안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133	광고마을 공동구판장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기타
134	다슬기화장실	장안구 환경위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135	로컬푸드직매장(광고마을공동구판장)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기타
13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일반번지 51-번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단독주택	주거시설
137	광고임시수련원 관사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숙박시설	주거시설
138	하광교경로당(다목적회관)	장안구 사회복지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복지시설
139	반딧불이화장실	장안구 환경위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140	상수도사업소 통합관리청사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업무시설	업무시설
141	광고임시수련원 독신숙소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숙박시설	주거시설
142	광고수련원 내무반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기타	주거시설
143	광고수련원 정신교육관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시설
144	광고수련원 창고(교보재)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창고시설	기타
145	광고수련원 창고(2.4종)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창고시설	기타
146	광고수련원 창고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창고시설	기타
147	광고수련원 통합막사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숙박시설	주거시설
148	광고임시수련원 공중화장실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기타	편의시설
149	세권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150	문화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151	세리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152	세류동 세정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153	신곡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노유자(노인및 어린이)시설	복지시설
154	신곡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	복지시설
155	세류3동 분회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156	세류3동 미화원 막사	권선구 세류3동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
157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컨테이너	권선구 건설과	-	기타
158	방치차량보관소	권선구 경제교통과	-	기타
159	권선구청 방치차량 보관소	권선구 경제교통과	기타	기타
160	세류1동 분회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기타	문화시설
161	권선구 세류1동주민센터청사(별관)	권선구 세류1동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162	권선구 세류1동주민센터청사	권선구 세류1동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163	세류1동어린이집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164	공신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165	가는골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166	시립 세곡 어린이집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167	유천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168	통미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169	버드내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170	권선구 세류3동주민센터청사	권선구 세류3동	기타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171	새마을문고학창 이전공사	권선구 세류3동	기타	기타
172	시립세류어린이집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기타	복지시설
173	버드내공중화장실	권선구 생활안전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174	버드내복지회관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175	버드내도서관	도서관사업소 호매실도서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176	버드내도서관	도서관사업소 호매실도서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177	버드내도서관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	-	복지시설
178	행복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노유자(노인및 어린이)시설	복지시설
179	행복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	복지시설
180	신성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181	버드내어린이집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기타	복지시설
182	현대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183	세류동 638-1번지 일원 생활체육시설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운동시설	체육시설
184	새터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185	구판장	경제정책국 회계과	-	기타
186	세화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187	권선구 세류2동주민센터청사	권선구 세류2동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188	평동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189	평동 12-15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
190	권선구 평동주민센터청사	권선구 평동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191	평동어린이집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기타	복지시설
192	평동배수펌프장	권선구 건설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하수 및 상수도
193	시립지방산업단지 어린이집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194	수원벤처밸리2	경제정책국 기업지원과	공장	업무시설
195	수원벤처밸리2 (6층)	경제정책국 기업지원과	업무시설	업무시설
196	고색향도문화전시관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시설
197	고색동작은말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198	환경사업소위생처리장-처리장 사무실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199	세차장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200	사무실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업무시설
201	화장실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편의시설
202	외부계단	환경국 하수관리과	기타	하수 및 상수도
203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204	경비실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205	처리장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206	원수저류조 수처리시설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207	환경사업소위생처리장 - 발효실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208	음식물사료화시설_건물(조립식판넬) 포함_후숙시설	환경국 청소자원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209	도로교통관리사업소청사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	업무시설	업무시설
210	체육시설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운동시설	체육시설
211	서수원주민편의시설	환경국 청소자원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212	솔대공중화장실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213	고색뉴지움	경제정책국 기업지원과	관광휴게시설	문화시설
214	가림리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215	바람개비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편의시설
216	오목천동장애인가간보호시설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217	온정마을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218	농업기술센터청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업무시설	업무시설
219	오목천동어린이집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기타	복지시설
220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서둔동일반번지1 -70번지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
221	서호(여)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	복지시설
222	서둔119안전센터	경제정책국 회계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기타
223	창고용 컨테이너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창고시설	기타
224	서호(남)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225	권선구 서둔동주민센터청사	권선구 서둔동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226	서둔동 동대본부	권선구 서둔동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227	수원시 더함파크	경제정책국 회계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업무시설
228	여기산게이트볼장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운동시설	체육시설
229	서둔동배수펌프장	권선구 건설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하수 및 상수도
230	여기산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231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서둔동 일반번지 260-66번지	권선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232	서둔동벌터체육문화센터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운동시설	체육시설
233	수원역 환승센터	안전교통국 도시교통과	-	기타
234	벌터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시설
235	여기산(동)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관광휴게시설	편의시설
236	장애인 실내게이트볼장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운동시설	체육시설
237	구)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업무시설
238	수원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	판매 및 영업시설	기타
239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판매 및 영업시설	기타
240	서호노인복지회관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241	실내배드민턴장(구운공원)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운동시설	체육시설

242	수원시권선구노인회지회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공공용시설	업무시설
243	권선구 노인회지회 회관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244	서수원체육관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	체육시설
245	군들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246	하구운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기타	체육시설
247	구운동 군들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248	권선구 구운동주민센터청사	권선구 구운동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249	수원시 권선구청	권선구 행정지원과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250	웃거리 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251	청산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252	서수원지식정보도서관	도서관사업소 호매실도서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도서관
253	골말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254	북탑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255	시립탑고을어린이집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기타	복지시설
256	탑골택시센터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기타
257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환경국 기후대기과	-	교육시설
258	권선구보건소	권선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업무시설	의료시설
259	시립금호어린이집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	복지시설
260	생태환경체험교육관	환경국 환경정책과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시설
261	칠보청소년문화의집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	기타	문화시설
262	권선구 금곡동주민센터청사	도시개발국 시설공사와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263	금곡동 주민센터	권선구 금곡동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264	칠보체육관 주차장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운동시설	기타
265	칠보체육관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	체육시설
266	상촌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267	수원시 장애인복지관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268	수원서부차고지 사무동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공공용시설	업무시설
269	수원서부차고지 정비동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공공용시설	업무시설
270	호매실도서관	도서관사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도서관
271	호매실장애인복지관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272	호매실도서관	도서관사업소 호매실도서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도서관
273	노림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274	노림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275	권선구 호매실동주민센터청사	권선구 호매실동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276	자목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277	두암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278	칠보산편의시설(칠보맷돌화장실)	권선구 생활안전과	-	편의시설
279	장애인복지관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280	장애인복지관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281	보훈회관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 -	기타
282	권선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편의시설
283	고령화장실(고령공원)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편의시설
284	안용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285	곡반정동 제1공영주차장	안전교통국 도시교통과	자동차관련시설	기타
286	권선구 곡선동주민센터청사	권선구 곡선동	-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287	주차장	안전교통국 도시교통과	자동차관련시설	기타
288	곡반정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289	남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안전교통국 도시교통과	자동차관련시설	기타
290	인도래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291	실내배드민턴장(올림픽공원)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	체육시설
292	88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293	올림픽아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편의시설
294	권선119안전센터	경제정책국 회계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기타
295	권선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노유자(노인및 어린이)시설	복지시설
296	권선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 -	복지시설
297	권선구 권선1동주민센터청사	권선구 권선1동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298	권선구 권선1동주민센터청사(문서창고)	권선구 권선1동	- -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299	권선구 권선1동주민센터청사	권선구 권선1동	- -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300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기타	기타
301	장수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302	휴먼서비스센터	복지여성국 복지협력과	업무시설	업무시설
303	어공1호	권선구 건설과	기타	기타
304	어공2호	권선구 건설과	기타	기타
305	어공3호	권선구 건설과	기타	기타
306	권선 청소년 수련관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수련시설	교육시설
307	나그네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308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판매 및 영업시설	기타
309	권선지명유래비전통정자	권선구 녹지공원과	기타	문화시설
310	시립바론어린이집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기타	복지시설
311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선동 일반번지 1238-번지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기타	복지시설
312	권선동 커뮤니티센터	권선구 권선2동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313	권선구 권선2동주민센터청사	권선구 권선2동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314	도토리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	편의시설

		공원관리과		
315	셋길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편의시설
316	공원관리소(권선중앙공원)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업무시설
317	권선중앙 실내체육관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운동시설	체육시설
318	수원사랑어린이집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319	지혜샘도서관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도서관
320	여성문화공간-휴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업무시설	복지시설
321	한림도서관	도서관사업소 호매실도서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도서관
322	중앙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단독주택	복지시설
323	제일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324	건인보관소	안전교통국 도시교통과	업무시설	기타
325	입북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326	권선구 입북동주민센터청사	권선구 입북동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327	입북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선금)	권선구 입북동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328	아가위공중화장실	권선구 생활안전과	-	편의시설
329	당수동어린이집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330	오룡골경로당	권선구 사회복지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복지시설
331	팔달문화장실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	편의시설
332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333	2층 팔창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	복지시설
334	3층 청소년개구리쉼터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	-	복지시설
335	1층 교동우체국 무상대부중	경제정책국 회계과	-	업무시설
336	화성체험관(사랑채)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시설
337	수원화성 관광센터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338	화성행궁화장실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	편의시설
339	화서문초가집매점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340	한대우물 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단독주택	복지시설
341	화성사업소관리과(청사)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342	남창동 99-1 건물	박물관사업소 수원화성박물관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시설
343	남창동 99-28 지장물	박물관사업소 수원화성박물관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시설
344	경기도참전유공장애인협회회원시 지회(사용허가)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복지시설
345	경기도수원시팔달구남수동 일반번지	화성사업소	단독주택	주거시설

	100-15번지	문화유산관리과		
346	경기도수원시팔달구남수동 일반번지 11-102번지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단독주택	주거시설
347	경기도수원시팔달구남수동 일반번지 11-116번지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단독주택	주거시설
348	경기도수원시팔달구남수동 일반번지 11-39번지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단독주택	주거시설
349	행궁동 보듬이노눔이어린이집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기타	복지시설
350	남수택시센터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기타
351	팔달산관광안내소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	문화시설
352	남수문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기타	문화시설
353	전망좋은화장실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	편의시설
354	봉화대화장실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355	경기도수원시팔달구남수동 일반번지 99-1번지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단독주택	주거시설
356	연무대안내소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	문화시설
357	행궁동 환경미화원 센터	팔달구 환경위생과	-	기타
358	무형문화재전수회관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업무시설	업무시설
359	남향동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	복지시설
360	공도장(연무정)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	체육시설
361	연무정화장실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362	수원시 팔달구청	팔달구 행정지원과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363	수원화성박물관	박물관사업소 수원화성박물관	공공용시설	문화시설
364	팔달구청	팔달구 행정지원과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365	흡연부스	팔달구 행정지원과	업무시설	기타
366	팔달구 노인회지회 회관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	기타
367	복수동 274-7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	복지시설
368	화홍문 공공한옥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관광휴게시설	주거시설
369	복수동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	복지시설
370	팔달구 행궁동주민센터청사	팔달구 행궁동	공공용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371	지하주차장 트랜치	팔달구 행궁동	공공용시설	기타
372	선경도서관	도서관사업소 선경도서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도서관
373	행궁동 주민 커뮤니티센터	팔달구 행궁동	단독주택	문화시설
374	신안동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복지시설
375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시설
376	행궁광장 공중화장실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377	경기도수원시팔달구신평동 일반번지 93-1번지	안전교통국 도시교통과	단독주택	주거시설
378	신평동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복지시설
379	장안문화장실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380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1단계)(1차분)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시설
381	수원시예절교육관및 전통식생활 체험관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시설
382	전통식생활체험관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시설
383	장안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복지시설
384	화성사업소 구청사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과	공공용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385	문학인의 집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386	화서문앞 관광안내소 및 쉼터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시설
387	화서문 앞 공공한옥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시설
388	장안사랑채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389	한옥기술전시관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	문화시설
390	교동경로당	경제정책국 회계과	-	복지시설
391	팔달구보건소	팔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료시설	의료시설
392	팔달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공사	팔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의료시설
393	팔달구보건소(건물) 교동56-4	팔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료시설	의료시설
394	가족여성회관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의료시설	복지시설
395	교동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단독주택	주거시설
396	교동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397	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398	중앙도서관	도서관사업소 선경도서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도서관
399	매교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400	팔달구민 생활체육센터	경제정책국 회계과	업무시설	체육시설
401		팔달구 행정지원과	업무시설	업무시설
402	팔달구 매교동주민센터청사	팔달구 매교동	공공용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403	팔달구 매교동주민센터청사(부녀회사무실)	팔달구 매교동	공공용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404	노숙인실내급식시설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업무시설	기타
405	팔달구 매산동주민센터청사	팔달구 매산동	공공용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406	매산3가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공공용시설	복지시설
407	수원시민회관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	문화시설
408	구)중부소방서 건물	경제정책국 회계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기타
409	수원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경제정책국 회계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복지시설
410	수원시민회관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문화체육교육국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시설

		문화예술과		
411	고등동어린이집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기타	복지시설
412	팔달구 고등동주민센터청사	팔달구 고등동	공공용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413	환경미화원의집	팔달구 환경위생과	공공용시설	기타
414	쌍우물 택시센터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자동차관련시설	기타
415	고등분회 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416	고등분회 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	복지시설
417	서장대매점 안내소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418	진달래화장실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	편의시설
419	수원휴먼주택	도시정책실 도시재생과	공동주택	주거시설
420	화서1동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421	수원휴먼주택	도시정책실 도시재생과	공동주택	주거시설
422	해피마음터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업무시설	업무시설
423	화서1동 환경관리원 쉼터부지 매입	팔달구 환경위생과	단독주택	주거시설
424	동말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공공용시설	복지시설
425	화서1동어린이집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426	팔달구 화서1동주민센터청사	팔달구 화서1동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427	숙지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편의시설
428	공원관리소(숙지공원)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기타
429	화서다산도서관	도서관사업소 선경도서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도서관
430	화서다산도서관	도서관사업소 선경도서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도서관
431	수원시니어클럽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공공용시설	복지시설
432	서문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433	컨테이너하우스	팔달구 건설과	창고시설	기타
434	팔달구 안전건설과 자재창고	팔달구 건설과	창고시설	기타
435	시립 서호어린이집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	복지시설
436	목재바닥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운동시설	기타
437	백로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편의시설
438	낙조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편의시설
439	365특별방범기동순찰대 초소(사용허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기타
440	시립 꽃피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기타	복지시설
441	꽃피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442	팔달구 화서2동주민센터청사	팔달구 화서2동	공공용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443	컨테이너	장안구 경제교통과	업무시설	기타
444	화서2동 신축청사	팔달구 행정지원과	공공용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445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복지여성국 다문화정책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시설
446	정자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편의시설

447	수원시녹색교통회관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업무시설	업무시설
448	산아래화장실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449	숙지공원내 다목적체육관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공공용시설	체육시설
450	지동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451	신북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452	동문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	복지시설
453	창룡문외성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	문화시설
454	창룡문안내소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	문화시설
455	창룡마을창작센터	팔달구 지동	-	문화시설
456	지동어린이집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기타	복지시설
457	미나리광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458	못골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459	팔달구 지동주민센터청사	팔달구 지동	공공용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460	컨테이너 하우스	팔달구 행정지원과	창고시설	기타
461	팔달구 지동주민센터청사(참고)	팔달구 지동	공공용시설	기타
462	팔달구 우만2동주민센터청사	팔달구 우만2동	공공용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463	우만2동주민센터 엘리베이터	팔달구 우만2동	업무시설	기타
464	우만2동청사	팔달구 우만2동	공공용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465	장고개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466	보은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문화 및 집회시설	복지시설
467	충효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468	수곡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	복지시설
469	우만1동청사	팔달구 우만1동	공공용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470	팔달구 우만1동주민센터청사	팔달구 우만1동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471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	팔달구 우만1동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472	수원휴먼주택	도시정책실 도시재생과	공동주택	주거시설
473	지만119안전센터	경제정책국 회계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기타
474	산수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475	수원시 재가노인복지센터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476	창룡도서관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	-	도서관
477	중부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	복지시설
478	수원시평생학습관 외국어마을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	-	문화시설
479	창룡도서관	도서관사업소 선경도서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도서관
480	우만1동 환경관리원 쉼터	팔달구 생활안전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기타
481	봉화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482	우만156호어린이공원(솔밭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편의시설
483	우만2동어린이집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484	수원시청사	경제정책국 회계과	공공용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485	수원시청 제2청사	경제정책국 회계과	-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486	중국전통정원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487	가치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편의시설
488	돌하루방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편의시설
489	자유회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	기타
490	현충탑관리실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	기타
491	제1아외음악당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기타	문화시설
492	클래식(동)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편의시설
493	염원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관광휴게시설	편의시설
494	클래식(서)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편의시설
495	수원시민방위교육장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기타	기타
496	2호관사(선경아파트)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공동주택	주거시설
497	공원부지내 보상(주택)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 -	주거시설
498	셋골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499	인계본동경로당	경제정책국 회계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500	인계동본동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단독주택	복지시설
501	인계동본동 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 -	복지시설
502	팔달구 인계동주민센터청사	경제정책국 회계과	공공용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503	인도래 작은도서관	도서관사업소 선경도서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도서관
504	인계16호어린이공원(반달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기타	편의시설
505	인계동분회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506	팽나무고개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 -	복지시설
507	팽나무고개경로당	팔달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508	팔달문시장고객지원센터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	-	업무시설
509	주막거리경로당	영통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510	산남경로당	영통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511	효원경로당	영통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512	새터경로당	영통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513	면내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편의시설
514	바른샘도서관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	-	도서관
515	수원시 영통구청	영통구 행정지원과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516	매여울도서관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도서관
517	수원휴먼주택	도시정책실 도시재생과	공동주택	주거시설

518	영통구 매탄3동주민센터청사	영통구 매탄3동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519	공원관리소(머내생태공원)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기타
520	매탄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편의시설
521	미화원대기실	영통구 매탄1동	기타	기타
522	가마니골경로당	영통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523	가마니골 경로당	영통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524	매탄1동청사	영통구 매탄1동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525	매탄2동경로당	영통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526	수원형 복지주택 사업 주택	도시정책실 도시재생과	공동주택	주거시설
527	영통구 매탄2동주민센터청사	영통구 매탄2동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528	교류공무원숙소아파트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	주거시설
529	삼성아파트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공동주택	주거시설
530	영통구 매탄4동주민센터청사	영통구 매탄4동	- -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531	삼성1차아파트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공동주택	주거시설
532	매탄공원 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공공용시설	편의시설
533	매탄공원 다목적 체육시설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운동시설	체육시설
534	솔숲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편의시설
535	매여울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편의시설
536	실내배드민턴장(매탄공원)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	체육시설
537	매탄공원경로당	영통구 사회복지과	-	복지시설
538	산드래미아랫말경로당	영통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539	매탄어린이집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기타	복지시설
540	HAPPY 해누리작업장(팩토리월드 내)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공장	업무시설
541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팩토리월드 내)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공장	업무시설
542	매원경로당	영통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543	매원경로당	영통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544	원천면내경로당	영통구 사회복지과	-	복지시설
545	영통구 원천동주민센터청사	영통구 원천동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546	원천 택시쉼터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기타
547	아주(아)경로당	영통구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548	실내배드민턴장(영흥공원)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	체육시설
549	영흥체육공원내 관리사무소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운동시설	체육시설
550	영흥체육관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운동시설	체육시설
551	수원역사박물관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시설

552	수원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553	열림배수지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	공공용시설	하수 및 상수도
554	열림배수지점검동-저지배수지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	공공용시설	하수 및 상수도
555	열림일림가압장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	공공용시설	하수 및 상수도
556	광고홍재도서관	도서관사업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도서관
557	수원도시안전통합센터	도시안전통합센터	업무시설	업무시설
558	연암배수지 관리동-저지배수지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	관광휴게시설	하수 및 상수도
559	연암배수지화장실-저지배수지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	공공용시설	하수 및 상수도
560	연암배수지관리사-저지배수지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	공공용시설	하수 및 상수도
561	수원시광교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노유자(노인및 어린이)시설	복지시설
562	영통구 광교1동주민센터청사	영통구 광교1동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563	수원시연화장	환경국 위생정책과	-	기타
564	수원광교박물관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시설
565	수원시공도장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운동시설	체육시설
566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과	기타	기타
567	광고 씨름체육관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운동시설	체육시설
568	재활용사업소 가로모래적치동	환경국 청소자원과	공공용시설	기타
569	재활용사업소 대형폐기물동	환경국 청소자원과	공공용시설	기타
570	재활용사업소 세차정비동	환경국 청소자원과	공공용시설	기타
571	자원순환센터 관리동	환경국 청소자원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572	자원순환센터 관리동(신관)	환경국 청소자원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573	자원순환센터 관리동	환경국 청소자원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574	자원순환센터 복지동	환경국 청소자원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575	재활용사업소 선별처리동	환경국 청소자원과	공공용시설	기타
576	재활용사업소 옥외저장고	환경국 청소자원과	공공용시설	기타
577	재활용사업소 경비계량동	환경국 청소자원과	공공용시설	기타
578	영통구 광교2동주민센터청사	영통구 광교2동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579	반달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기타	편의시설
580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복지시설
581	영통동경로당	영통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582	신성경로당	영통구 사회복지과	기타	복지시설
583	영통체육문화센터	영통구 행정지원과	운동시설	체육시설
584	영통마을회관	환경국 청소자원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기타
585	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	복지시설
586	영통구 영통1동주민센터청사	영통구 영통1동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587	참새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편의시설

588	공원관리소(황골공원)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기타
589	공원관리소(영통중앙공원)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기타	기타
590	영통도서관	도서관사업소 광고홍채도서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도서관
591	영통구보건소 청사 신축 공사	영통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공용시설	의료시설
592	영통 청소년문화의 집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수련시설	문화시설
593	주민편의시설동	환경국 청소자원과	-	기타
594	공장동	환경국 청소자원과	기타	업무시설
595	세차동	환경국 청소자원과	기타	기타
596	부경비동	환경국 청소자원과	기타	기타
597	옥외화장실	환경국 청소자원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편의시설
598	주경비동	환경국 청소자원과	기타	기타
599	관리동	환경국 청소자원과	기타	기타
600	연결통로	환경국 청소자원과	기타	기타
601	수원자원회수시설내 동아리실	환경국 청소자원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시설
602	달맞이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기타	편의시설
603	영통2동 문화센터	영통구 영통2동	업무시설	문화시설
604	영통구 영통2동주민센터청사	영통구 영통2동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605	교통공원내관리사무소및교육동	안전교통국 도시교통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기타
606	살구화장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편의시설
607	재해구호물품비축창고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	기타
608	주차장(영통공영주차장)	안전교통국 도시교통과	자동차관련시설	기타
609	수원시장애인공동작업장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기타	기타
610	영통구 망포2동주민센터청사	영통구 망포2동	업무시설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611	태장마루도서관	도서관사업소 광고홍채도서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도서관
6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일반번지 234-44번지 (태장마루도서관)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도서관
613	관리본관(관리동 지하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업무시설	하수 및 상수도
614	가스브로와동(1처리장 산발호조 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15	염소투입동(1처리장 종침4계열뒤 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16	초침계단실3 (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17	초침계단실 2 (지하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18	초침계단실 2 (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19	초침계단실 1 (지하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20	초침계단실 1 (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21	포기조계단실3-2(1처리장 생물반응조 3계열 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22	포기조계단실3-1(1처리장 생물반응조 3계열 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23	포기조계단실3-1(1처리장 생물반응조 3계열 지하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24	포기조계단실1-3(1처리장 생물반응조 지하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25	후생복지관 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업무시설	하수 및 상수도
626	수위실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27	종침계단실 3 (지하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28	종침계단실 3 (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29	종침계단실 2 (지하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30	종침계단실 2 (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31	종침계단실 1 (지하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32	종침계단실 1 (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33	초침계단실 3 (지하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34	침전지계단 및 전기실(지하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35	침전지 계단 및 전기실 (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36	공원화장실	환경국 하수관리과	공공용시설	편의시설
637	중간펌프동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38	슬러지저장창고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39	송풍기 탈수기 농축기동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40	송풍기 탈수기 농축기동 (4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41	송풍기 탈수기 농축기동(3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42	송풍기 탈수기 농축기동(2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43	유입펌프동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44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지하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운동시설	체육시설
645	운동시설(골프연습장) 3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운동시설	체육시설
646	운동시설(골프연습장) 2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운동시설	체육시설
647	운동시설(골프연습장) 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운동시설	체육시설
648	골프연습장(지하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운동시설	체육시설
649	골프연습장(2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운동시설	체육시설
650	골프연습장 (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운동시설	체육시설
651	화장실	환경국 하수관리과	공공용시설	편의시설
652	염소투입동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53	송풍기 탈수기 농축기동(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54	종침계단실 4(지하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55	종침계단실 4 (지상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56	초침계단실 4 (지하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57	초침계단실 4 (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58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59	후생복지관 지하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업무시설	하수 및 상수도
660	후생복지관 2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업무시설	하수 및 상수도
661	포기조계단실1-2(1처리장 생물반응조 1계열 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62	포기조계단실1-2(1처리장 생물반응조 1계열 지하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63	포기조계단실1-1(1처리장 생물반응조 1계열 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64	포기조계단실1-1(1처리장 생물반응조 1계열 지하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65	공동구계단실(1처리장 소화조 옆 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66	공동구계단실(1처리장 소화조 옆 지하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67	급수동(1처리장 종침4계열뒤 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68	급수동(1처리장 종침4계열뒤 지하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69	포기조계단실2-4(1처리장 생물반응조 4계열 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70	포기조계단실2-4(1처리장 생물반응조 4계열 지하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71	포기조계단실2-3(1처리장 생물반응조 4계열 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72	포기조계단실2-3(1처리장 생물반응조 4계열 지하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73	포기조계단실2-2(1처리장 생물반응조 2계열 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74	포기조계단실2-2(1처리장 생물반응조 2계열 지하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75	포기조계단실2-1(1처리장 생물반응조 2계열 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76	포기조계단실2-1(1처리장 생물반응조 2계열 지하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77	포기조계단실1-3(1처리장 생물반응조 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78	염소투입동(1처리장 종침4계열뒤 지하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79	가스브로와동(1처리장 산발효조 지하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80	관리분관식당(관리동 2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업무시설	하수 및 상수도
681	송탈수기동(1처리장 통제실 지하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82	송탈수기동(1처리장 통제실 2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83	송탈수기동(1처리장 통제실 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684	관리분관(관리동 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업무시설	하수 및 상수도
685	포기조계단실3-2(1처리장 생물반응조 3계열 지하1층)	환경국 하수관리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상수도

| 저자 약력 |

김주석

공학박사(사회공간시스템학)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경기도 지속가능협의회 공동체위원회

수원시속가능협의회 연구위원회

E-mail : tinkneti@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지역공동체에 의한 지역 공공시설 관리운영」(2018, 수원시정연구원)

「동단위 협력적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2017, 수원시정연구원)

「지역단위 주민계획·조직의 통합적 운용을 통한 도시재생제도 연구」(2017,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